

# 빛에서 빛으로

2017  
교회의 사회적책임 컨퍼런스

가계부채로 고통 받는 이웃을 위한  
기독교의 역할



**일시** 11월 9일 (목) 오후 2~6시  
**장소** 100주년기념교회 사회봉사관

**주최**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실  
Christian  
Ethics  
Movement



**발행일** 2017년 11월 9일(목)

**발행인** 백종국 | **편집인** 정병오 | **편집** 박제민, 최진호

**발행처**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컨퍼런스와 부채소각 퍼포먼스는 향상교회(담임목사 김석홍)의 후원으로 진행합니다.

■ **향상교회** 주소 16985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연동로 140 **전화** 031-282-2311 **홈페이지** [hyangsang.com](http://hyangsang.com)

# 빛에서 빛으로

2017  
교회의 사회적책임 컨퍼런스

가계부채로 고통 받는 이웃을 위한  
기독교의 역할



**일시** 11월 9일(목) 오후 2~6시  
**장소** 100주년기념교회 사회봉사관

**주최**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



# 순서

일시 \_ 2017년 11월 9일(목) 오후 2시~6시

장소 \_ 100주년기념교회 사회봉사관

오후 02:00~02:10(10") 인사

오후 02:10~02:40(30") **발제1. 한국의 가계부채, 원인과 대안**

\_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주빌리은행 은행장

오후 02:40~03:10(30") **발제2. 부채에 대한 기독교적 입장**

\_ **김근주** 기독교연구원 느헤미야 교수

오후 03:10~03:25(15") 휴식

오후 03:25~03:35(10") **부채소각 퍼포먼스** \_ **박제민** 기독교윤리실천운동 팀장

오후 03:35~04:35(60") **사례발표. 부채해방을 위한 실천사례**

발제 **오종규** 온누리교회 사회선교부 사회책임팀 총무

**이파람** 예수마을교회 목사

**김덕영** 희년은행 사무처장

오후 04:35~04:55(20") **기윤실 부채해방운동 소개**

\_ **이상민**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좋은사회운동본부 본부장  
법무법인 에셀 변호사

오후 04:55~05:55(60") **종합토론**

\_ **좌장 배종석**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공동대표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오후 05:55~06:00(05") **마무리**

## 자료집 목차

- [발제1] 한국의 가계부채, 원인과 대안 **04**
  - \_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주빌리은행 은행장
- [발제2] 부채에 대한 기독교적 입장 **24**
  - \_ **김근주** 기독교연구원 느헤미야 교수
- [사례1] 온누리교회 부채탈출119 **41**
  - \_ **오종규** 온누리교회 사회선교부 사회책임팀 총무
- [사례2] 예수마을교회 '희년마을기금' **44**
  - \_ **이파람** 예수마을교회 목사
- [사례3] 희년은행의 도전과 과제 **50**
  - \_ **김덕영** 희년은행 사무처장
- 기윤실 부채해방운동 소개 **68**
  - \_ **이상민** 기윤실 좋은사회운동본부 본부장, 법무법인 에셀 변호사

# 한국의 가계부채, 원인과 대안

- 경제 양극화의 역사적 기원, 구조적 기원, 그리고 해소 전략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 IMF 경제위기 20년의 회고

저는 20년 전 이맘 때 오랜 외국 생활을 마치고 귀국하여 소위 'IMF 경제위기'의 발발과 진행, 한국 정부와 기업의 대응을 지켜보면서 분노와 우려의 나날을 보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IMF와 미국정부를 앞세운 국제금융자본의 탐욕과 이들의 요구를 마치 위기 극복을 위한 금과옥조처럼 여기는 국내의 관료 및 학자들과 여론주도층에 분노했고, 기업 도산과 정리해고로 나날이 늘어나는 실업자들과 과도한 시장 자유화와 규제완화의 물결을 보면서 마음이 한없이 무거웠습니다. IMF가 애초에 요구한 구제금융 조건보다 한 발 더 나간 개혁조치, 소위 'IMF플러스'를 추진한 김대중 정부는 조기에 위기를 극복했다고 자축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들은 한국경제에 점증하는 고용불안과 극도의 양극화라는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중산층이 축소되고 빈부의 격차가 확대되는 경제적 양극화 현상은 지난 20년간 한국사회에서 가장 큰 이슈로 대두되었습니다. 근래에는 이러한 격차가 고착화되는 현상, "개천에서 용 나기"가 불가능해지는 문제, 즉 사회적 이동성 혹은 계층이동성의 감소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태생을 탓하며 '수저계급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90년대 초 버블 붕괴 이후 일본에서 많이 논의된 '격차 사회'라는 현상이 우리나라에서도 본격화된 것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IMF 경제위기 20년, 한국 사회의 격차해소 전략과 정책"이라는 주제로 사회정책연합학술대회가 열린 것은 참으로 시의적절한 일이며, 제가 기조강연을 맡게 된 것은 큰 영광입니다. 격차 사회의 문제는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이 필요하겠지만, 저는 경제 양극화라는 면에 초점을 맞추어 그 역사적 기원과 구조적 원인, 그리고 해소 전략을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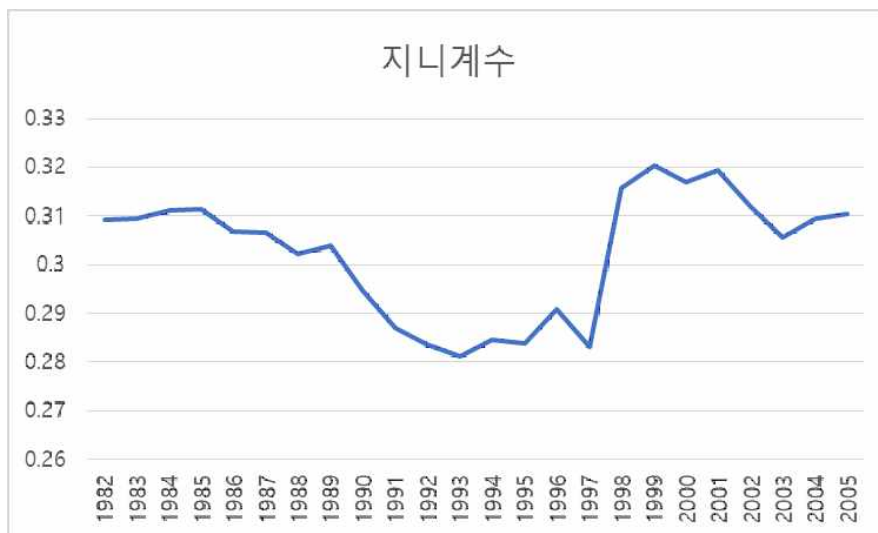
## 양극화는 IMF 위기에서 비롯되었는가?

먼저 경제 양극화의 역사적 기원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널리 알려진 주장의 하나는 양극화가 1990년대 이래 급진전된 세계화와 정보화 등 경제환경 변화의 불가피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중

국 등 저임금 국가로의 아웃소싱 증가와 빠른 기술변화에 대한 적응력 차이 때문에 숙련노동과 비숙련 노동 간의 임금격차가 확대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일리가 있는 주장이지만, 동일한 환경 변화를 겪으면서도 경제구조 및 제도와 정책의 차이에 따라 나라마다 양극화의 정도가 매우 다르게 나타났다는 점에 비추어 부분적인 설명 밖에 되지 않습니다. 양극화의 기원에 관한 다른 하나의 유력한 주장은 바로 'IMF위기 기원론'입니다. IMF위기 이후 양극화가 극적으로 악화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또한 당시 추진한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과 제도개혁이 고용불안정 심화와 자영업의 과잉 팽창을 불러와 결과적으로 중산층 붕괴에 일조했고, 또한 비정규직과 성과보상제도의 확산, 그리고 대기업 임원들의 보수 폭증 등을 불러와 임금격차를 확대시켰다는 지적은 타당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양극화의 기원이 IMF위기이며 IMF위기 탓에 양극화가 발생했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양극화에 관한 대다수 논의가 마치 IMF위기 이후에 양극화가 처음 등장한 것처럼 치부하고 있지만, 엄밀한 자료 분석은 다른 결과를 보여줍니다. 저는 과거에 도시근로자가구 소득의 불평등도를 측정하는 GINI계수와 소득 양극화 정도를 수치화 한 ER지수, 그리고 임금소득분배의 GINI계수와 격차지수(P90/P10) 등 여러 분배 지표들의 시계열 자료를 대상으로 추세전환의 시점을 살펴보았습니다(유종일, 2011). 모든 지표들이 1980년대 초반의 높은 수준에서 1980년대 중반 이후 완만한 하락세를 보이다가 1990년대 초반 하락세가 멈추고 미약하나마 상승세로 반전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GINI계수와 ER지수는 1993년에, 그리고 임금GINI계수와 격차지수는 1994년에 각각 최저점을 기록하였습니다. 편의상 GINI계수의 추이만 보자면 <그림 1>과 같습니다. 물론 IMF위기 직후에 GINI계수가 급격히 상승한 것도 사실이지만, 1993년에 과거의 하락 추세가 반전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이러한 추세 반전이야말로 일시적 증가보다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현상입니다. 회귀분석을 통해 보다 엄밀하게 추세 전환 시점을 추정한 결과는 1991년에서 1994년 사이에 양극화가 시작되었음을 보여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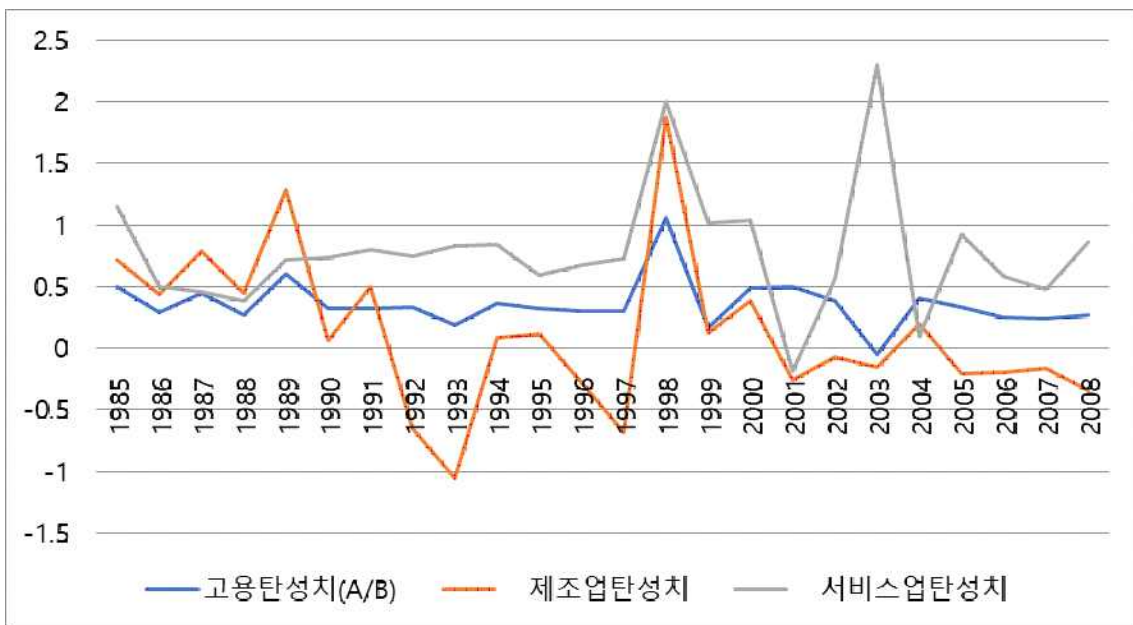
<그림 1: 도시근로자가구 소득의 GINI계수 추이>



양극화 경향이 시작된 시점이 IMF위기 이전이라면, 양극화가 IMF위기와 그에 따른 신자유주의적 구조 조정과 제도개혁의 산물이라고 보는 것은 중대한 오류입니다. 이런 시각은 자칫 양극화의 원인과 해소 방법에 관해 그릇된 결론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박정희 시대 이래의 관치경제가 매우 성공적이었는데 신자유주의적 개혁이 양극화와 저성장을 초래하고 말았다는 일각의 주장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저는 이러한 생각이 소위 '황금시대 증후군(Golden Age Syndrome)'의 발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심화된 양극화와 민생 악화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과거를 미화하면서 소위 '박정희 신드롬'에 빠졌던 것이 사실입니다(유종일, 2011). 그 결과 박정희의 아바타처럼 등장한 이명박과 박정희의 친 딸 박근혜가 차례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경제는 양극화 해소는 고사하고 성장 동력의 회복도 전혀 이루지 못했습니다. 양극화의 뿌리는 박정희 시대에 있다고 보는 저에게는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1990년대 초반에 양극화 경향이 시작되기 전에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1980년대 말 '3저호황'을 계기로 한국경제에 구조적 변화가 발생했으며, 이러한 변화로 인해 성장에 따른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가 거의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통상 분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호황이 끝나고 불황이 도래한 1990년대 초반부터는 분배의 악화가 시작되었습니다. 1980년대에 분배가 미약하나마 개선되던 추세가 반전된 것입니다. 이렇게 낙수효과를 무력화시킨 구조적 변화의 핵심은 바로 성장과 고용 간의 관계가 변화한 것입니다.

<그림 2: 고용탄성치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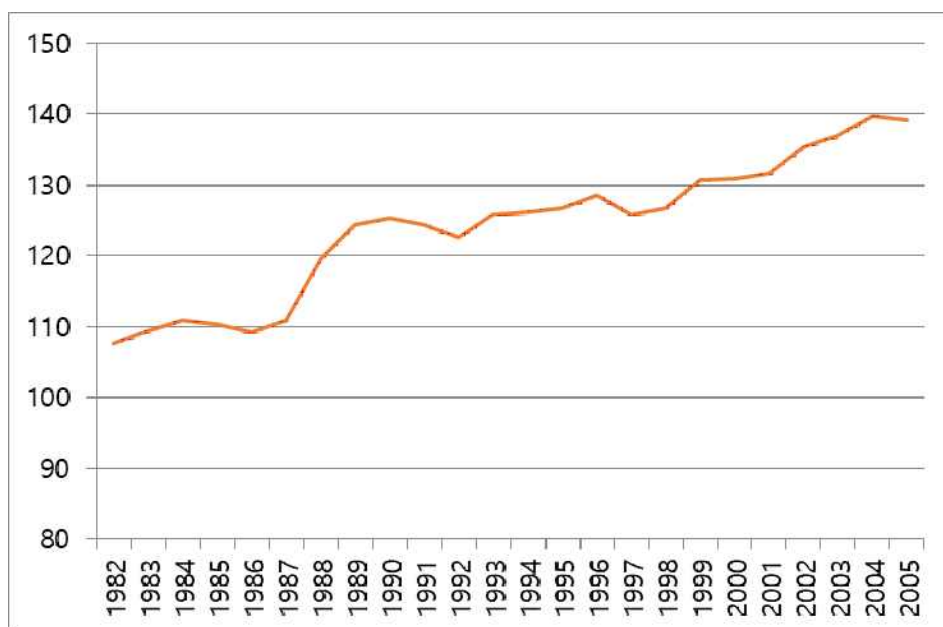




생산이 1% 증가할 때 고용이 몇% 증가하는지를 고용탄성치라고 하는데,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0년 이전에는 0.35 내외에서 움직이다가 그 이후에는 0.25 내외로 다소 하락한 수준에서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제전체의 탄성치가 미미하게 하락한 것보다 훨씬 급격하고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제조업분야의 고용탄성치는 1990년부터 급격한 하락을 하더니 1992년부터는 외환 위기 직후의 예외적 시기를 제외하면 지금까지도 마이너스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제조업 생산이 증가하는데도 고용은 줄어드는 현상이 지속되어 제조업의 고용 비중은 물론 절대 고용량까지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1990년대 이전에는 제조업과 유사한 수준이었던 서비스업의 고용탄성치는 오히려 증가하였고, 이 때문에 경제전체의 고용탄성치는 크게 변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고용탄성치의 하락은 곧 노동생산성 증가율의 상승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고용탄성치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변화한 것은 양자 간의 생산성 격차 확대를 수반했습니다. 결국 제조업의 고용 축소는 서비스업 분야 저임금 고용 확대와 맞물려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출주도형 성장을 추구한 한국경제에서 수출제조업체의 고용확대라는 낙수효과의 핵심 기제가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성장과 고용 간 관계의 변화는 1980년대 말 한국경제가 맞닥뜨린 역사적 전환점에서 이루어진 치명적인 선택의 결과였습니다. 경제적으로는 '3저호황' 시기에 노동시장이 완전고용 포화상태에 이르러 한국경제에 만성적으로 존재하던 과잉인구가 고갈되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1987년 '민주화'가 이루어지면서 군사독재 시절에 극도로 억압되었던 노동조합운동이 활성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급능력이 풍부한 수출대기업을 중심으로 실질임금이 급상승하였고, 그 결과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생산성 및 임금격차가 크게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림 3: 기업규모별 임금격차의 추이>



임금 압력과 노사 갈등에 직면한 한국경제는 과거 풍부한 저임금 노동에 의존하던 성장 패턴에 변화가 불가피하게 되었고, 여기서 선택지는 두 가지가 존재했습니다. 바람직한 길은 노사 간의 타협과 협력을 기초로 기업은 기술 향상에, 노동은 숙련 향상에 투자하면서 생산성 향상과 임금 인상을 함께 이룩하는 ‘고급 성장의 길(high road)’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수출대기업들은 다른 길, ‘저급 성장의 길(high road)’을 택하고 말았습니다. 이들은 자동화 설비에 투자하여 고용을 축소하고 탈숙련을 추구했습니다. 나아가 아웃소싱(outsourcing)을 확대하고, 해외투자에 나서는 등 고용회피전략을 적극 구사했습니다. 근래에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과 남용이 문제가 되고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고 있지만, 정규직-비정규직 사이의 임금격차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가 더욱 심각한 것이 한국 노동시장의 특성입니다(정이환, 2016).

이와 같이 1980년대 말의 전환점에서 수출대기업들이 고용회피전략을 선택한 것이 고용문제와 불평등 문제가 악화된 결정적 계기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로써 대기업의 좋은 일자리는 줄어들고, 제조업과 서비스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격차가 확대되는 악순환이 발생했습니다. 그리하여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가 심화하였고, 성장의 낙수효과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전환기에 수출대기업들이 고용회피전략을 선택한 배경은 무엇이이었을까요? 세 가지 정도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박정희 시대 이래 노동억압체제 하에서 형성된 적대적 노사관계입니다. 새롭게 힘을 얻은 노동조합들은 매우 전투적이었고, 과거의 사고방식과 관행에 젖은 기업들은 노조를 골칫거리로 여기고 통제의 대상으로만 취급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사협력에 입각한 ‘고급성장’의 길은 선택하기 어려웠습니다. 둘째, 수출주도 산업화 과정에서 주요 부품소재를 수입하여 조립한 후 수출하는 조립형생산체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조립형산업에서는 설비투자과 자동화에 입각한 ‘규모의 경제’ 실현과 현장노동자의 숙련보다는 엔지니어 중심 공정기술에 입각한 생산성 향상이 경쟁력의 기반이 되기 때문에, 장기 고용과 숙련 축적에 입각한 생산성 향상이라는 방식은 낡았었습니다(전병유·정준호, 2015). 흔히 IMF위기 이전에는 평생고용관행이 만연하여 고용이 안정되어 있었다고 오해하기도 하지만, 이는 대기업 사무직 등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것이었고 한국 노동시장은 IMF위기 이전에도 극히 유연한 시장이었습니다. 셋째, 1980년대 후반부터 재벌에 의한 경제력 집중이 심화했습니다. 금융자유화 정책에 따른 재벌들의 제2금융권 진출과 ‘3저호황’기의 수출 증대에 따른 이익 증가, 그리고 추진된 시장자유화 정책 등을 배경으로 재벌대기업들의 시장지배력과 정치적 영향력이 커진 것입니다. 이로써 재벌대기업이 불공정 하도급거래를 통해 하청기업을 착취하는 체제가 일반화되었고, 이는 또한 대기업의 고용회피전략에 매우 유용하게 활용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노동탄압으로 인한 적대적 노사관계, 수출주도 산업화 과정에서 형성된 조립형생산체제, 재벌 중심 산업화 추진으로 인한 경제력 집중 등 박정희 시대에 형성된 경제발전모형의 주요 특징들이 전환

기의 선택을 ‘고급 성장’이 아닌 ‘저급 성장’으로 유도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에서 저는 IMF위기 이후 박정희 모형에서 탈피하여 신자유주의를 추구한 것이 양극화의 기원이라는 견해를 거부하고, 오히려 양극화의 역사적 뿌리는 박정희 모형이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유종일, 2011).

## 성장체제론의 시각에서 본 양극화의 구조적 원인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요약하자면, 양극화의 구조적 원인은 1980년대 말 ‘3저호황’ 이후에 성장과 고용 사이의 관계가 변화한 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이러한 변화를 성장체제론이라는 이론적 틀에 입각해서 재해석하고자 합니다. 한마디로, 박정희 시대에 형성된 성장체제가 ‘3저호황’을 마지막으로 그 수명을 다했으나, 그 후에 성장체제의 전환이 지체됨으로써 성장 동력의 급격한 쇠퇴와 분배의 양극화가 동시에 진행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위에서 논의한 임금의 불평등 외에도 성장률의 하락과 자본소득이 양극화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성장체제는 매우 거시적인 개념으로서 각종 제도와 정책이 너무라면, 성장체제는 숲에 해당합니다.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아서는 한국경제가 당면한 성장과 분배의 문제를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올바른 대안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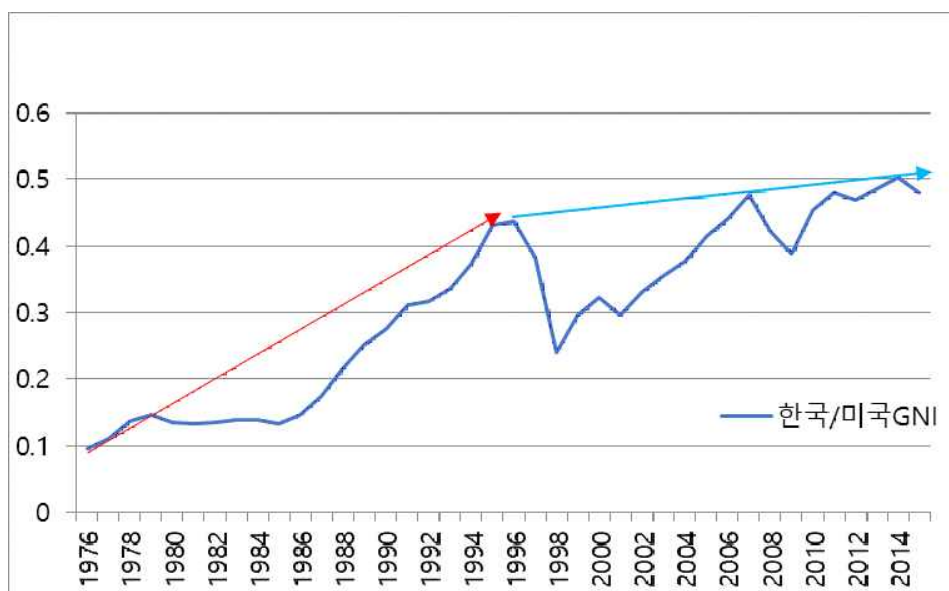
먼저 성장체제란 인구증가, 자본축적, 기술발전 등 생산확대 양식(공급측면)과 분배, 소비, 신용 등 순환 양식(수요측면)이 상호 양립가능하게 형성되어 일정한 성장패턴을 이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통합성장이론(Unified Growth Theory)은 성장체제의 3단계를 정체 상태가 유지되는 맬더스 체제, 자본축적과 인구증가가 경제성장을 주도하는 요소투입형 성장이 나타나는 전환체제, 그리고 인적자본에 대한 수요의 증가와 인구증가 하락(demographic transition)이 맞물려서 인적자본과 지적자본이 성장을 주도하며 지속적인 일인당 소득의 증가가 실현되는 지속성장체제로 구분합니다. 후발국의 경우에는 선진국 기술 따라잡기(catching-up)를 통하여 전환체제 시기에도 고도성장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장체제를 저는 ‘요소투입형 추격성장체제’라고 부르려 합니다. 그러나 손쉬운 추격의 단계가 지나면, 두 번째 성장체제의 전환으로 ‘혁신주도형 지속성장체제’를 이룩해야만 지속성장이 가능합니다(Aghion and Howitt, 2005). 박정희 시대에 형성된 성장체제는 요소투입형 추격성장체제의 일종이었습니다. ‘3저호황’ 이후 이 성장체제가 한계에 달했지만, 혁신주도형 지속성장체제로의 전환이 지지부진한 탓에 한국경제가 곤란을 겪게 되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박정희 시대에 형성된 성장체제에는 네 가지 기둥이 있었습니다. 첫째, 정부가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세우고 대통령이 ‘수출진흥확대회의’를 주재하는 등의 국가주도 성장전략입니다. 정부가 시중은행을 소유하고 금융자원을 통제하여 정책목표에 따라 자원을 배분하는 소위 ‘관치금융’이 핵심적인 정책수단으로 활용되었고, 특정 대기업에게 특정 산업 분야를 책임지도록 하여 효율적이고 빠른 산업화를 달성한다는 ‘선택과 집중’ 원칙 하에서 정부의 특혜성 지원을 바탕으로 재벌이 급성장했습니다 습니다. 둘째, 자본을

우대하고 노동을 억압하는 정책을 추진 함으로써 이윤을 확대하고 투자율을 제고하여 자본축적의 극대화를 추구했습니다. 인구과잉, 자본부족 상황에서 이는 효과적인 성장전략이었습니다. 셋째, ‘후발국의 이익(advantage of backwardness)’을 최대한 향유하면서 선진기술의 모방, 습득, 응용을 통해 선진기술 따라잡기를 추구했습니다. 넷째, 내수보다 해외시장을 중시하는 수출주도 산업화전략을 채택했고, 이에 따라 당시의 비교우위 여건상 노동집약적인 조립형산업체제가 형성되었습니다.

박정희식 성장체제는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급속한 산업화와 고도성장을 이뤄냈습니다. 생산가능인구와 고용의 빠른 확대, 그리고 급속한 자본축적에 기초한 요소투입형 성장체제였지만, 선진기술의 도입에 의한 기술발전이 또한 빠르게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여건에 비추어 국가주도와 수출주도의 산업화전략도 기본적으로 적합한 것이었습니다. 박정희식 성장체제의 성과는 인정해야 하지만 그 부작용도 간과하면 안 됩니다. 과도한 성장 추구가 경상수지 적자나 인플레이션 등 거시경제적 불균형을 야기했으며, 해외시장과 해외자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져 해외충격에 취약해졌고, 정부주도 산업화 과정에서 관치금융과 재벌체제가 형성되었습니다. 분배면에서는 성과가 더욱 복합적이어서 분배의 개선과 악화가 반복되었습니다. 노동집약적 수출산업을 중심으로 급속한 고용창출이 이루어짐으로써 성장의 과실이 널리 퍼지는 낙수효과를 발휘한 측면과 더불어, 자본을 우대하고 노동을 억압하면서 자본축적극대화를 추구한 결과 분배가 악화되는 측면도 존재했습니다. 또한 부동산 가격의 폭등으로 자산 분배의 불평등이 급속하게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낙수효과가 상대적으로 강했던 1960년대와 1980년대에는 분배가 개선되거나 유지된 반면, 1970년대에는 불평등 증대 효과가 더욱 강력하게 작용했습니다. 세계은행 등 일각에서 말하는 ‘동반성장’은 과도한 장밋빛 평가입니다.

<그림 4: 미국 대비 한국의 일인당 국민소득 추이>



박정희식 요소투입형 추격성장체제는 1960년대부터 시작해서 1980년대 말 ‘3저호황’에 이르기까지 두

자릿수 성장률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성장률은 속절없이 하락을 거듭하였습니다. 1990년대 7%대에서 2000년대 5% 그리고 2010년대에는 3%대로 주저앉았고, 최근 수년간은 2%대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제가 성숙해지는 과정에서 일정한 성장 둔화는 불가피합니다. 문제는 너무 일찍 너무 심하게 성장동력이 쇠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한국경제가 ‘조로증’에 걸렸다고 말합니다(유종일, 2017). 그 근거 중의 하나는 잠재성장률보다 실제성장률이 더 낮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잠재성장률 전망치도 자꾸 하향 조정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하나는 개도국의 소득수준이 선진국 수준에 점차 근접한다는 ‘수렴가설’에 입각해서 한국과 미국의 일인당 국민소득을 비교해보면 드러나는 사실입니다.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0년대 중반까지는 빠르게 수렴하여 미국의 약 45% 수준까지 쫓아갔는데, 그 이후 미국과의 상대적 격차가 거의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로증의 핵심적인 증상은 노동에 비해 자본이 과도하게 많은 과잉축적입니다. 자본축적을 극대화하는 성장체제가 장시간 작동한 결과 ‘3저호황’ 시기에 이르러 인구과잉 시대가 끝나고, 이후 자본과잉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과잉축적은 자본을 우대하고 노동을 억압한 정책의 필연적 귀결이었습니다. 한국은 선진국 근처에 가기도 전부터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과 가장 빠른 노령화를 겪게 되었고, 반면 높은 투자율에 힘입어 자본축적은 급속도로 진행되었습니다. 과잉축적은 한국 경제의 활력을 죽이고 분배를 악화시키는 근본 원인입니다. 과잉축적으로 자본의 생산성이 낮아진 탓에 추가적인 자본축적에 입각한 성장은 점점 효과가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낮은 자본생산성은 곧 높은 피케티 비율, 즉 자본-소득 비율을 의미하고, 이는 피케티(Thomas Piketty)가 강조하듯이 소득불평등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됩니다(유종일, 2015). 이 점은 다음 절에서 더욱 자세하게 논하고자 합니다. 한국경제의 과잉축적 문제는 높은 피케티 비율을 통해서 확인됩니다.

물론 자본축적 자체가 나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당연히 자본은 많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문제는 과잉축적으로 자본의 생산성이 낮아지는, 즉 자본-소득 비율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과잉축적은 단순히 인구에 비해 자본이 많이 축적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인구 대비 자본축적의 정도에 걸맞은 기술 진보와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한국의 자본-소득 비율이 구미선진국보다 높은 것이 한국의 인구 대비 자본축적 정도가 더 높아서가 아닙니다. 기술 수준 혹은 총요소생산성이 낮아서 자본의 생산성이 낮은 것이고, 같은 이유로 노동생산성도 구미선진국에 비해 절반이 채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문제의 핵심은 생산성 증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3저호황’ 이후 과잉축적 문제가 대두할 즈음 이 부분에서도 어려움이 발생했습니다. 산업화가 어느 정도 완성되고 모방이 쉬운 기술은 거의 습득을 마쳤기 때문에, 선진기술 따라잡기에 입각해서 손쉽게 기술 진보와 생산성 향상을 이루기가 점차 어려워졌습니다. 내생적으로 혁신을 이루어내는 일은 선진기술의 모방, 습득과 응용에 비해 훨씬 어려운 과제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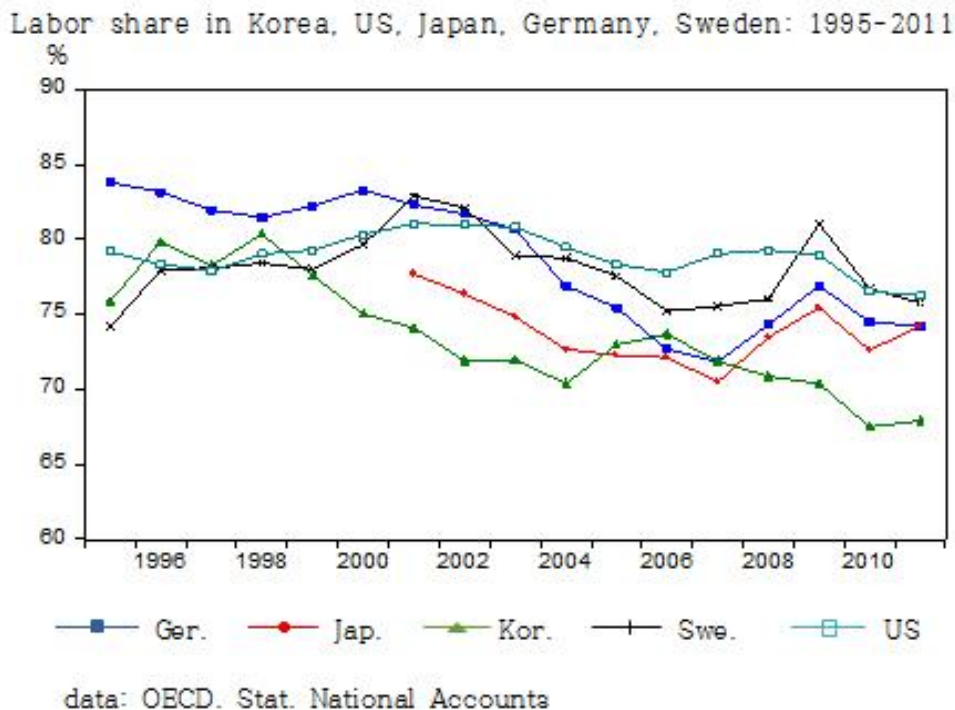
한국경제가 과잉축적 상태에 빠진 것은 한편으로는 과잉인구의 고갈이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충분한 생산성 증가로 이를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곧 통합성장이론이 말하는 두 번째 전환을 제 때에 이루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이 전환은 주된 성장 동력을 요소투입, 자본축적에서 혁신주도로 바꾸는 것입니다. 노동 억압에 기초한 자본축적 극대화 전략에서 벗어나 복지를 중시하고 인적 자본과 지식 자본을 우선하는 사람중심 전략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는 수출주도 성장전략에서 해외시장과 내수 시장의 균형적 확대로의 전환을 수반하는 것입니다. 또한 선진기술의 모방과 습득을 넘어서서 내생적 혁신 역량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주입식, 습득형 교육에서 토론식, 창의형 교육으로의 전환, 그리고 연구개발 시스템도 목전의 이익만을 좇아 응용연구에 치중하는 풍토에서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연구를 고취하는 풍토로의 전환과 ‘선택과 집중’이 아닌 ‘백화제방’과 ‘백가쟁명’으로의 방향 전환이 필요했습니다(송위진 등, 2006). 이는 곧 정부주도 산업정책과 관치금융의 유습을 청산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하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재벌의 산업 지배를 타파하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며 중소기업과 혁신적 창업을 활성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박정희식 성장체제를 송두리째 뒤집어 엮는 대전환이 요구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로부터 이어지는 사고방식과 관행, 제도와 정책, 그리고 재벌과 관료 등 기득권이 이러한 대전환을 가로막았으며, 많은 국민이 ‘박정희 신화’라는 ‘성공의 함정’에 빠져 변화를 거부했습니다. 그 결과 전환은 매우 더디게 진전되었고 때로는 강력한 반동의 힘에 가로막히면서 지체되고 말았습니다.

성장체제 전환이 지체됨으로써 성장 동력이 쇠퇴하는 가운데, 정부는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단기적인 부양책을 일삼았고 이는 더 큰 화를 자초하기 일쑤였습니다. 1990년대 이후 한국경제가 걸어온 길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990년대 전반에는 부양책과 자본자유화 등으로 과잉투자가 일어났고 이는 결국 1997년 IMF위기를 낳고 말았습니다. 이후 한국경제는 글로벌 경제위기까지 제2의 수출주도 성장을 하면서, 내수는 갈수록 취약해졌으며 대외의존도는 극도로 심화되었습니다. 구조개혁은 미룬 채 내수를 부양하려는 정책은 2003년 카드채 위기와 그 이후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가계부채 폭등을 불러옴으로써 일시적 성공에 비해 훨씬 큰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물론 1990년대 이래 다양한 경제개혁이 추진되었지만 방향을 잘못 잡거나 실행이 미흡했습니다. 관치경제를 청산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하는 것은 자유화 조치와 함께 재벌개혁 등 공정한 경쟁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와 사회안전망의 강화가 수반되어야 하는 것인데, 자유화만 앞서가고 보완적 조치는 미흡했습니다. 과잉축적은 혁신이 부진한 탓인데, 역대 정부는 항상 투자 부진을 문제의 근원으로 진단하고 법인세 인하나 규제완화 또는 노동시장유연화 등 자본을 더욱 우대함으로써 투자를 늘리려는 정책을 취함으로써 과잉축적 문제는 오히려 심화했습니다. 혁신주도, 지식경제, 창조경제 등 온갖 좋은 얘기들을 했지만, 교육개혁은 서열화에 막혔고 연구개발은 ‘선택과 집중’에 입각한 따라잡기 방식에 매몰되어 진전이 더디었습니다. 박정희식 성장체제의 최대 수혜자이며 따라잡기 성장 방식을 체화하고 있는 재벌은 내생적 혁신의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 건물주가 되고 싶은 나라: 자본소득과 사회적 이동성

소득불평등을 논할 때 노동소득이 전체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자본소득의 비중보다 훨씬 크다는 이유로 노동소득에만 집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자본소득은 노동소득보다 훨씬 더 불평등하게 분배되기 때문에 소득불평등을 분석할 때 결코 간과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근래에는 전체소득에서 자본소득이 차지하는 비중, 즉 자본소득분배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서 자본소득의 영향이 더욱 커졌습니다. 바로 피케티가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그림 5>는 미국, 일본, 독일, 스웨덴 등의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근래에 노동소득분배율이 하락하고 있음을, 즉 자본소득분배율이 상승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가 가장 심각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주상영, 2015). 자본소득은 불평등 문제에서 중요하지 않다거나 피케티의 분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견해는 적절하지 않은 통계를 사용하여 얻은 매우 잘못된 결론입니다(김진방, 2016).

<그림 5: > 노동소득분배율 추이의 국제 비교



자본소득 불평등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부동산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소득 대비 주택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진 것이 불평등을 악화시킨 중요한 요인입니다. 주택보유자는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막대한 자본이득을 향유했으며, 주거비 부담이 늘어난 비보유자와의 사이에 소비 여력의 격차가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유행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거주용 주택 외에 상업용 부동산도 자본소득 불평등의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한 연구에 의하면 매년 발생하는 부동산소득의

규모가 무려 GDP의 30%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부동산소유가 극도로 불평등하다는 사실에 비추어, 부동산 소유가 소득불평등을 낳는 중요한 원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본소득의 불평등은 단순히 전반적인 소득불평등의 증가뿐만 아니라 사회적 이동성의 하락 혹은 기회의 불평등 증가를 초래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피케티가 <21세기 자본>에서 설파한 핵심 논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는 자본수익률이 경제성장률을 초과하는 상태가 지속되면 자본-소득 비율과 자본소득분배율이 상승하고, 결국 상속부자가 자수성가하는 사람보다 더 많은 부와 특권을 누리는 ‘세습자본주의(patrimonial capitalism)’ 사회가 도래할 것이라고 합니다(유종일, 2015).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자본이 현재에 생산하는 소득에 비해 클수록 과거의 유산이 현재의 노력을 압도하게 된다는 논리입니다. 그는 역사적으로 이런 상황이 일반적이었으며 예외적으로 낮은 자본수익률과 예외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시현한 20세기의 일부 기간에만 소득불평등이 낮았고 사회적 이동성이 높았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피케티의 이론이 한국경제를 이해하는 데도 큰 통찰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자본축적 과정에서 나타나는 근본적인 불평등 심화의 동학(dynamics)이 경제개발 초기부터 오랫동안 작동했습니다. 본격적인 경제개발이 시작되기 전 한국경제의 자산 분배는 매우 예외적으로 평등한 상황이었습니다. 토지 개혁이 단행되었고, 6·25동란과 인플레이션으로 실물자산과 금융자산이 파괴된 덕분입니다. 그러나 성장과정에서 엄청난 자본이 축적되었고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으며, 그 분배는 갈수록 편중되었습니다. 둘째, 고도성장이 이루어지던 기간에는 자본-소득 비율의 상승이 억제되었고 자본소득분배율도 제한되었으나, ‘3저호황’ 이후 성장체제 전환의 지체에 따른 급격한 성장을 하락과 함께 이 비율들이 상승하였습니다. 이로써 자본소득의 불평등이 이전보다 훨씬 중요해졌고, 이는 곧 부의 대물림이 심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경제성장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기회가 줄어든 까닭에 빈곤의 대물림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셋째, 피케티의 우려를 증명하기라도 하듯이 한국은 자수성가한 부자는 적고 상속부자의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통계와 자료가 부족하여 한국경제가 얼마나 세습자본주의에 근접했는지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이 땅의 젊은이들은 ‘헬조선’이라는 신조어와 ‘수저계급론’을 통해서 한국은 이미 노력보다 태생이 중요한 사회가 되었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사회적 이동성 혹은 기회의 평등이 단지 자본축적과 경제성장이 빚어내는 경제법칙의 산물인 것만은 물론 아닙니다. 제도와 정책에 의해 부와 빈곤의 대물림을 약화시킬 수도, 강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째, 조세제도입니다. 상속증여세가 느슨하고, 자본과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가 전반적으로 미약하기 때문에 조세제도에 부의 대물림을 약화시키는 기능이 매우 취약합니다. 둘째, 교육제도입니다. 과거에는 교육이 계층상승의 사다리 역할을 했지만, 근래에는 오히려 계층 간 불평등을 재생산하고 고착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 불공정 경쟁입니다. “돈도 실력”이라던 정유라 씨의 말처럼 불공정 경쟁이 만연해 있어, 이미 부와 권력을 차지한 기득권자들이 부정한 방법까지



동원하여 실력과 노력에 의해 배분되어 마땅한 사회적 보상까지 차지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다양한 형태의 차별과 불공정 거래, 경제력 남용과 ‘갑질’ 등이 모두 기회의 평등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아마도 불공정 경쟁 문제가 과거보다 악화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경제와 사회에는 항상 불공정이 만연해 있었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성장률이 하락하면서 기회가 감소하고 부와 빈곤의 대물림이 심화된 탓에 체감도가 훨씬 올라간 것으로 짐작됩니다.

## 양극화 해소 전략에 대한 합의

이제까지 경제적 양극화에 관해서 크게 세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여기서 도출되는 양극화 해소 전략에 대한 합의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IMF위기 이후 외국인자와 신자유주의 담론의 영향력 아래 진행된 노동시장유연화 등의 시장개혁과 극심한 경기침체가 양극화의 급격한 심화를 불러온 것은 사실이지만, 양극화의 시발점은 1990년대 초반이었고 이는 보다 구조적인 원인에 의해 촉발된 것이었습니다. 즉, 노동시장의 포화상태에 대응하여 수출대기업들이 자동화와 아웃소싱에 주력하며 고용회피전략을 택함으로써 성장이 좋은 일자리 증가로 이어지지 못하게 되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분절을 중심으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가 심화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차별 해소나 고용안정성 강화 등 신자유주의적 개혁의 부작용을 되돌리려는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거대한 협상력 차이와 그에 따른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없다는 실효성이 제한적일 것입니다. 이는 재벌 개혁과 공정거래 강화를 요구할 뿐만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처방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과 협상력 강화를 필요로 합니다. 이 과정에서 숙련에 기초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대안적 생산체제를 성립시켜야 이중구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산별교섭을 확산하여, ‘연대임금’을 추구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위와 같은 구조적 변화의 근거에는 성장체제 전환의 지체가 있었습니다. 요소투입형 추격성장체제에서 혁신주도형 지속성장체제로의 전환이 지지부진함으로써 성장률이 급격히 하락하고 자본-소득 비율 및 자본소득분배율이 상승한 것입니다. 성장률 하락은 수출대기업들의 고용회피전략으로 악화된 낙수효과를 더욱 악화시켰으며, 자본소득분배율 상승은 소득불평등 증가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지속성장체제로의 완전한 전환을 위해서는 노동 억압에 기초한 자본축적 극대화 전략에서 벗어나 복지를 중시하고 인적 자본과 지식 자본을 우선하는 사람중심 전략으로, 수출주도 성장전략에서 해외시장과 내수시장의 균형적 확대로, 무엇보다 선진기술의 모방과 습득을 넘어서서 내생적 혁신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교육과 연구개발 시스템, 그리고 산업정책의 혁명적 전환이 필요합니다.

셋째, 노동소득의 분배 못지않게 자본소득의 분배도 소득불평등과 양극화에 큰 영향을 미치며, 분배가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 못지않게 성장도 분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사실 이 때문에 성장체제의 관점에서 양극화의 근본 원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자본소득의 비중이 커지는 것은 사회적 이동성 혹은 기회의 평등이라는 관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와 빈곤의 대물림을 약화하기 위한 제도와 정책이 시급합니다. 조세제도와 교육제도를 이러한 관점에서 개혁해야 하고, 모든 영역에서 기득권자들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해야 합니다.

## 강연을 마치며

이제 저의 강연을 마치기 전에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고자 합니다(홍장표, 2014, 2015).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건강보험 보장성 등 복지혜택 확대 등의 정책은 분배정책 혹은 단기부양정책일 뿐 장기적 성장정책은 될 수 없다는 비판이 많이 제기 되었습니다. 그 때문인지 최근에는 정부 내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주장해온 ‘혁신성장’에 무게가 실리는 모습입니다. 지나친 불평등이 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한국의 현실에 비추어 소득분배의 개선이 단기적 경기부양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며, 이런 점에서 저는 소득주도 성장론이 일정하게 타당성을 지닌다고 생각합니다(유종일, 2017). 그러나 성장체제 전환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소득주도성장은 부분적입니다. 성공적으로 지속성장체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혁신성장’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해야 혁신성장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는 과거 정부도 표현만 달랐지 항상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혁신성장을 위해 규제완화를 하고 정부가 나서서 ‘4차산업혁명’을 지원한다는 얘기를 들으면 과거 정부와 과연 무엇이 다를지 걱정이 됩니다. 교육, 연구개발, 산업정책의 혁명적 변화가 전제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확실한 재벌개혁 없이 진정한 혁신성장은 이루기 어려울 것입니다.

성장체제 전환은 말할 것도 없고, 소득주도성장을 실현하는 것도 단시간 내에 이루기는 어렵습니다. 한국경제가 완전히 방향전환을 하는 것이어서 전환비용이 불가피합니다. 정책의 부작용이나 경제주체들의 저항도 발생하고, 심리적 불안도 야기합니다. 전환비용과 정치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자원마련에는 저항이 따르겠지만, 자본과세를 강화한다는 면에서 부동산 보유세와 법인세를 인상하는 것과 형평성과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종교인 과세를 실현하는 것 등은 어느 정도 여론의 지지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효과적인 재정지출로 서민경제에 온기를 돌게 하는 일은 개혁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줄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혁신주도 지속성장체제로의 전환을 머뭇거리 왔습니다. IMF위기 이후 민주정부는 방향을 상실했고,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아예 거꾸로 가고 말았습니다. 이미 5년 전에 경제민주화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형성되었지만, 박근혜 정부는 정경유착이라는 정반대의 길을 택했고 몰락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은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것이 경제민주

화를 포함하는 논리가 되어야 하고, 성장체제 전환으로 가는 디딤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한국경제는 양극화를 해소하고 포용적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참고문헌 추후 보완〉

IMF와의 협상과 IMF플러스 등에 관해서는 지주형(2011) 참조. 이제민(2007)은 외환위기 당시 IMF를 앞세운 국제금융자본이 한국경제의 신자유주의적 개혁을 강요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지적한다. IMF위기 이후 소득불평등이 매우 가파르게 상승한 결과,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은 OECD국가 중 가장 심한 수준이 되었다. 통계청이 발표하는 지니계수에 의하면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한국의 소득불평등은 OECD 평균 수준이며, 시장소득 기준으로는 OECD 최저로 나타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처분소득 기준으로는 OECD 평균 수준인 까닭은 소득재분배의 효과가 극히 낮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통계청의 조사결과를 국민계정이나 소득세 자료와 대조해보면 금융소득이 누락되고 상위소득자의 소득이 과소 파악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보정할 경우 시장소득 기준의 2010년 지니계수가 OECD에서 5번째로 높게 나온다 (김낙년·김종일, 2013). 신광영(2016)도 2015년 〈가계동향조사〉 자료에서 나타난 지니계수는 OECD 35개 국가중 14위이지만, 표본 수가 더 많고 상위 소득집단이 더 많이 포함된 〈가계금융복지패널조사〉 자료에서 나타난 지니계수는 5위임을 보여주고, 더 광범위한 자료를 기준으로 하면 소득분배는 더 나쁘게 나올 것이라고 주장한다. 노동소득의 불평등에 관한 지표들도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이 국제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다. OECD에 따르면 한국의 임금불평등은 ‘하위 10% 대비 상위 10% 비율’(P90/P10)이 4.7로서 2013년 미국, 이스라엘, 터키에 이어 네 번째로 높다. 이는 노동부가 ‘5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을 대상으로 집계한 결과에 토대한 것이고, 경제활동인구 조사 부가조사의 자료로 계산하면 위 비율이 5.1이 넘어 OECD 최고수준의 임금불평등을 보인다. 중위 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는 저임금계층의 비중도 24~25%로서 미국과 함께 OECD 국가 중 최고수준을 보인다 (유종일, 2016).

한 시점의 분배 불평등이 곧바로 사회의 불공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 어제의 부자가 오늘의 빈자가 되고 오늘의 빈자가 내일의 부자가 되는 사회적 이동성이 크다면, 한 시점의 불평등이 크다고 하더라도 일정 기간의 평균적 소득이나 부는 훨씬 더 평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분배 지표가 결과의 평등을 측정한다면, 사회적 이동성은 곧 기회의 평등을 측정한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런데 ‘개츠비곡선’이라고도 불리는 양자의 관계를 보면, 결과의 불평등이 심한 나라일수록 기회의 불평등도 큰 것으로 나타난다 (Alan Krueger, Economic Report of the President, transmitted to the Congress, February 2012). 우리나라의 경우도 결과의 불평등이 누적되면서 기회의 불평등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희삼(2009, 2012, 2014)은 일련의 연구를 통하여 우리 사회에서 계층 간 사회적 이동성이 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었고, 특히 교육의 문제를 지적하였다. 계층상승 가능성에 관한 현대경제연구원의 설문조사에서도 비관적 인식이 증가하고 있다. 개개인이 열심히 노력하더라도 계층상승 가능성이 낮다는 부정적 응답률이 2013년 75.2%에서 2015년 81.0%로 5.8%p 상승하였다 (현대경제연구원, 2015).

경제학 문헌에서 불평등 증가의 원인으로 가장 주목 받은 것은 기술 변화이며 (Card and Dinardo 2002; Autor, D. H., L. F. Katz, and M. S. Kearney. 2006), 세계화도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Feenstra and Hanson 1996).

일찍이 Atkinson(2000)이 각국의 제도와 정책의 차이에 따라 양극화 현상이 차별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강조한 바 있으며, Krugman(2007)도 미국의 양극화는 세계화나 기술변화보다는 소수 부유층을 위한 정책을 편 정치적 변화에 의해 초래된 것임을 주장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참여연대에서 ‘양극화와 시민사회의 대안전략: 시장, 비정규직, 노동연대’라는 주제로 2005년에 개최한 제46회 참여사회 포럼의 논의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산하 경제정의연구소가 ‘양극화, 진단과 처방’이라는 주제로 2006년에 개최한 제1회 경제정의포럼의 논의를 들 수 있다.

극히 예외적으로 유경준(2002)은 외환위기 이전부터 중산층 감소 추이가 나타났다는 것을 지적하였고, 전병유·김복순(2005)이 1990년대 이후 고용구조 양극화가 심화되었음을, 정이환 (2013)은 1995년을 변곡점으로 임금불평등이 확대됨을 강조하였다.

회귀분석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양극화의 지표들을  $X$ 라고 하고 시간( $t$ )을 독립변수로 놓고 추세를 검증한다. 추세는 선형 추세이며 1982년부터 2005년까지 사이에 추세가 한 번 변화했다는 가정 아래, 추세가 변화한 연도를  $t=\tau$ 라 하면,

$$X_t = \alpha + \beta_1 \min(t - \tau, 0) + \beta_2 t + D_t + \epsilon_t$$

와 같은 회귀방정식을 설정할 수 있다. 여기서  $\alpha$ 는 상수항,  $\epsilon_t$ 는 오차항이며, 설명변수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추세를 나타내는  $\beta_1 \min(t - \tau, 0) + \beta_2 t$ 항과 외환위기라는 특수상황을 감안하기 위한 더미변수(dummy variable)  $D_t$ 로 구성된다. ( $t = 1998, 1999, 2000$ 이면  $D_t = 1$ , 여타의  $t$ 에 대해서는  $D_t = 0$ 으로 놓는다.) 그러면 추세전환 시점인  $\tau$ 에 이르기 전까지 매년  $X$ 의 증가 추세는  $\beta_1 + \beta_2$ 이고,  $\tau$  이후의 추세는  $\beta_2$ 가 된다.  $\tau$ 를 1983, 1984, ..., 2003까지 차례로 설정하고 회귀분석을 실시한 후, 가장 설명력이 높은  $\tau$ 를 선택하는 방법에 의해 추세전환 시점을 추정할 수 있다. 외환위기 더미가 포함되면 추세전환 시점은 1991~1994년 사이로, 포함되지 않으면 1989~1995년 사이로 추정되었다 (유종일, 2011).

특히 장하준 교수의 주장은 상당한 반향을 일으킨 바 있다(장하준 정승일, 2005).

제조업의 고용비중이 감소하는 탈산업화(de-industrialization) 현상은 경제발전단계 고도화의 자연스런 결과이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구미 선진국들과는 달리 제조업의 부가가치생산 비중은 줄어들지 않으면서도 고용 비중이 급격히 감소했다.

종업원 300인 이상의 대기업과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는 1980년대에 110% 내외를 유지했으나, 민주화 이후 급상승하여 1988년에 120%를 기록하고, 1999년에 130%, 2003년에 140%로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

국제노동기구(ILO)를 중심으로 숙련과 생산성에 기초한 high-road 경쟁 전략과 비용절감에 입각한 low-road 경쟁 전략에 관한 논의가 있어왔다. 이러한 개념을 적용한 사례로 Milberg and Houston(2005) 참조.

박정희 시대 이래 우리나라의 근속연수는 매우 짧고 이직률은 매우 높았다(유종일, 1997). IMF위기 이전에도 기업들은 정리해고, 명예퇴직, 희망퇴직 등을 활발하게 추진했다(정이환, 2016).

1980~2005년의 26년간 우리나라 광업·제조업의 시장집중도와 산업집중도는 장기적 하락 추세를 보인 반면, 일반집중도는 1980년대 후반 이후 상승하는 양상을 나타냈다(이재형, 2008). 즉 좁게 정의된 시장 내지 산업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는 한국경제의 경쟁도가 제고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소수 대기업의 국민경제적 영향력(이른바 경제력 집중)은 1980년대 말경부터 증가하였다는 것이다. 특히 이 일반집중도가 대기업 각각의 개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임을 감안할 때, 계열사를 모두 포함한 기업 집단 단위로 측정한다면, 경제력 집중의 심화 경향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날 것으로 추정된다.

1992년 정주영의 대선 출마와 1994년 이견희의 북경 발언 등 정치권력에 대한 도전은 재벌의 영향력 강화를 상징하는 사건이었다. 1990년대에 들어서서 본격적으로 정책금융과 산업정책을 폐기하는 등 시장자유화 정책이 추진되어 과거의 국가 통제는 약화되는데, 이미 시장에서 지배적 위치를 구축한 재벌들에 대한 시장 규율은 제대로 부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의 문어발식 확장과 규모 확대 경쟁에 고삐가 풀렸다. 성급한 자본자유화와 더불어 과잉투자와 대규모 기업 부실이 발생하고, 결국 1997년에 외환 위기가 발발했다.

통합성장이론은 Galor and Weil(2000), Galor(2005) 등 참조. 여기서 말하는 전환체제와 지속성장체제는 각각 하야미의 Marx형 성장과 Kuznets형 성장과 유사하다(Hayami, 2007). 통합성장이론은 수요 측면은 무시한 채 공급측면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레굴라시옹(조정) 학파의 축적체제론에서는 상품

의 생산과 순환 및 소비와 분배를 조절하는 제도들의 상호보완적 집합체로서의 조절양식(mode of regulation)을 총체적으로 고려한다.

이 전환을 이루지 못하면 성장이 급격히 둔화되어 소위 '중진국 함정'에 빠지게 된다. 소득 수준만 놓고 보면 한국이 선진국이 되었다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OECD 국가 중 노동시간이 압도적으로 길기 때문이며, 생산성 면에서는 선진국이라고 부르기 어렵다. 중진국 함정에 의해 선진국을 향한 발걸음이 상당히 지체된 것만은 분명하다.

박정희 모형의 네 기둥은 서로 맞물려 있었다. 투자의 증대는 곧 자본재 수입의 증대를 의미했기 때문에 자본축적 극대화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수입에 필요한 외화를 벌어야 했고, 박정희 정부가 수출을 강조한 근본적 이유는 이것이었다(Rodrik, 1995). 그리고 노동 억압과 임금 억제 정책으로 내수시장이 제한되었기 때문에 수출이 더욱 중시되었다. 수출주도 전략은 선진기술 따라잡기 전략과 맞물려 있었다. 수출주도 전략을 통해 선진국 시장과 접촉면을 확대함으로써 선진기술 모방을 촉진한 것이다. 일례로 OEM 수출은 기술이전의 효과적인 방법이었다. 이 모든 것을 국가주도로 추진해 나갔다.

1970년대에는 가용자원을 상대적으로 자본집약적인 중화학공업에 집중투입함에 따라 재벌은 고속성장을 하였지만 수혜 계층의 폭은 한정되었다. 투자재원 확대를 위해 인플레이에 의한 강제저축이 이루어짐으로써 성장의 혜택이 반감되었고, 부동산 값이 폭등하면서 자산분배의 불평등이 심화되었다. 불평등 확대를 비판하는 이들에게 정부는 노골적으로 “선성장, 후분배”를 정책방향으로 내세웠다.

World Bank(1993)는 한국 등 동아시아의 경제성장을 동반성장으로 평가하였으나, 필자는 분배의 양상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음을 보여준 바 있다(You, 1998).

과거에 KDI는 2010년대의 잠재성장률을 3.8%, 2020년대는 2.9%로 전망했고, OECD는 2017년까지 3.4%, 2018~30년까지 2.4%로 전망한 바 있다.

1961년에 한국의 일인당 국민소득은 92달러, 미국은 2,935달러였으며, 2015년에는 각각 27,222달러와 56,084달러였으므로, 상당한 수렴이 일어난 것이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시기에 따라 큰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961년에 한국의 국민소득은 미국의 1/30이 채 안 되는 3.1%에 불과했는데 1976년에는 1/10 가까운 9.6%에 이르렀고, 1996년에는 1/2에 다가가는 43.7%까지 따라갔다. 이때까지는 수렴가설에 부합하여 한국의 소득수준이 빠르고도 지속적으로 미국 수준에 접근해갔다. 그러나 그 후 20년이 지난 2015년에는 한국이 일인당 소득이 미국의 48.5%로서 여전히 1/2을 밑도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과잉축적이란 노동에 비해 자본이 과도하게 많아 자본의 생산성이 낮은 상황을 의미한다. 적은 양의 자본에 많은 노동이 달라붙어 일할 때에 비해 많은 양의 자본에 적은 노동이 달라붙어 일하는 경우에 자본 한 단위의 생산량이 낮은 것은 당연한 일이다. 동일한 원리를 경제성장의 관점에서 본 것이 '수확체감의 법칙(Law of Diminishing Returns)'이다. 자본이 부족할 때는 자본을 조금만 축적해도 생산을 크게 증가시키지만, 자본이 풍부해질수록 그러한 효과는 작아진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경부고속도로를 처음 건설했을 때는 물류 개선에 의한 생산증가 효과가 컸지만 최근 건설한 고속도로들은 그런 효과가 미미하다.

선진국을 대상으로 국부/소득 비율을 평가한 결과 미국 4.45, 영국 4.92, 캐나다 5.03, 독일 5.67로서 국부가 국민소득의 4.5~6배 수준이고, 이 비율이 가장 높은 경우에는 호주 7.07, 프랑스 7.34, 일본 7.95로서 약 7~8배에 이른다. 한국의 경우 한국은행 자료에 의하면 2012년에 이 비율이 무려 9.45였다(주상영, 2015). 한국의 피케티 비율이 이렇게까지 높은 데에는 높은 토지 가격의 영향이 있다. 이 때문에 한국의 피케티 비율이 프랑스, 일본, 호주 등에 비해 약 1.5배 정도 높아진다. 하지만 이를 감안하고 비교하더라도 한국의 피케티 비율은 여전히 가장 높은 편이다. 이는 토지를 제외한 생산 자본만을 놓고 볼 때에도 한국의 자본/소득 비율이 매우 높고, 거꾸로 자본의 생산성은 매우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요소투입 증가는 노동력 증대와 자본축적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과잉인구가 고갈되고 인구성장률이 하락함에 따라 요소투입 증가는 실질적으로 자본축적을 의미하게 되었다.

반면 노동시장 유연화로 포장된 노동 억압 정책은 극단적 저출산과 인구절벽을 초래하여 자본과잉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은행의 '기업하기 좋은 나라' 지수에서 세계 최상위권에 드는데, 국제노동조합연맹의 '노동자의 권리' 평가에서는 세계 최하위 수준에 있다.

따라잡기 전략으로 성장한 재벌기업들은 좀처럼 이 전략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재벌은 우리나라 R&D를 주도하지만 항상 근시안적이고 실용적인 연구에만 집착하고,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연구나 모험적인 연구에 투자하지 않는다. 가장 앞선 기업이라는 삼성전자의 경우도 스스로를 fast-follower로 규정하고, 남보다 앞서 신기술 개발에 투자하는 모험을 피한다. 재벌은 고급 자원을 독점하고, 산업생태계를 지배함으로써 혁신적인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다. 자수성가한 부자가 드물고 상속부자가 부를 대부분 차지함으로써 기업가정신이 쇠퇴하는 문제도 상당 부분 재벌문제에서 비롯되고 있다.

자본소득의 원천이 되는 순자산의 분배는 소득분배보다 훨씬 불평등하다. 2015년 우리나라 전체 가구

순자산의 지니계수는 0.614로 소득의 지니계수에 비해 월등히 컸다. 가처분소득의 경우 상위 10%가 전체의 29.1%를 차지한 반면, 순자산은 상위 10%가 전체의 43.7%를 차지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가계 자산의 대부분은 주택이고 또 그 많은 부분은 임대소득을 발생시키지 않는 자가 보유 주택이다. 따라서 자산소득의 분배는 더욱 극단적으로 불평등하다. 일례로 2008년 재정패널 자료에서는 상위 10%의 자산소득 점유율이 100%에 달했고, 2014년 자산소득 지니계수는 무려 0.953이었다(이우진, 2016). 통계청의 가계동향자료를 이용한 추정에서는 2008년의 재산소득 지니계수가 0.80으로 나타났다(강신욱·김현경, 2016). 2014년 최재성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2년 배당소득·이자소득 100분위 자료'에 따르면 배당소득의 경우 최상위 1%와 10%가 각각 전체 배당소득의 72.1%와 93.5%를 가져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자소득의 경우에도 최상위 1%와 10%의 몫이 각각 44.8%와 90.6%로서 극단적으로 높은 집중도를 나타냈다.

이러한 견해의 대표적 사례로 장하성(2015) 참조. 이 주장의 근거인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에는 기업의 자본소득 중 배당되지 않은 부분이 완전히 빠져있고 개인의 자본소득 중에서도 많은 부분이 제외되어 있어 전체 소득에서 자본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형편없이 작게 나타난다. 물론 기업은 궁극적으로 개인들이 소유하고 따라서 기업의 자본소득도 개인들에게 귀속된다.

<토지+자유 연구소>의 추정에 의하면, 2007년부터 2015년까지 부동산 거래에서 발생한 매매차익 규모는 매년 200~300조원에 이르며, 추가적으로 순임대소득의 규모는 연평균 100조 원을 상회한다. 부동산소득이 연평균 369조 원, GDP 대비 무려 28.5%나 되었다는 것이다(남기업, 2016).

먼저 개인의 부동산소유불평등을 보면, 무주택가구가 44.0%(2015년 현재)에 이르고 인구의 1%가 민유지의 55.2%를 인구의 10%가 97.6%를 소유하고 있다. 법인의 부동산소유는 이보다도 불평등하다. 2014년 현재 상위 1%의 법인이 전체 기업이 소유한 부동산의 76.2%(가액기준)를, 상위 10대 기업이 무려 35.3%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렇게 극단적인 소유의 편중이 계속 심화되고 있다(남기업, 2016).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가 경제전문지 포브스의 억만장자 명단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2014년 기준으로 한국인 억만장자 중 상속부자의 비율은 74.1%로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 이 비율이 중국과 일본에서는 각각 2%와 18.5%에 불과했으며, 미국은 28.9%, 유럽은 35.8%였다. 다른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국제자산정보회사 '웰스-X'와 듀크대 연구진의 분석에서도 우리나라의 자수성가형 부호 비율은 33.3%로 세계 평균 63.8%의 절반에 불과했으며, 조사대상 53개국 중 47위에 그쳤다.

피케티에 의하면 세습자본주의가 성립하기 위한 두 가지 조건이 있다. 첫째, 국민소득 대비 상속자본의 규모가 커야한다. 이는 다시 자본/소득 비율이 6~7 정도로 충분히 크고, 자본의 대부분이 상속자본일 것을 요구한다. 둘째, 상속자본의 분배가 극도로 집중되어 있어야 한다. 한국의 자본/소득 비율은 이미




충분히 높다. 그러나 민간자본에서 상속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파악할 길이 없다. 과거 상당 기간 성장률이 높았기 때문에 상속자본의 비중은 아직은 비교적으로 낮을 것으로 추정되나, 근래 성장률이 저하되어 이 비중이 점차 늘어날 것이다. 상속자본의 집중도는 극단적으로 높을 것으로 짐작된다.

통상 대다수 상속인은 각종 공제로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겨우 2%정도만 상속세를 납부한다. 기업 상속공제는 무려 500억 원까지 가능하며, 재벌의 편법적 상속은 너그러운 세법마저 무력화한다.

김희삼(2014)에 의하면 서울대 입학생들 중 특목고 출신 비율이 2002년 22.8%에서, 2011년 40.5%로 두배 가까이 높아졌는데, 서울지역 고교 1학년 학생 중에서 아버지 학력이 대졸 이상인 비율이 특목고는 92.2%에 달하는 반면 일반고는 60%, 특성화고는 26.8%로 큰 차이를 보인다고 한다. 사교육에 의존하는 입시경쟁, 특목고나 자사고 등 고교 다양화 정책, 입학사정관제 도입 등으로 복잡하고 다양한 입시제도, OECD 최고 수준의 사립학교 비율과 대학등록금 등으로 인하여 명문대학 입학에 가정형편이 갈수록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

이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것은 권력을 이용한 이권추구행위다. 공동체의 공공선을 추구하고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존재하는 정치권력을 사적인 치부행위에 사용하는 것은 공정경쟁을 원칙으로 하는 시장경제 질서를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행위다. 이런 일이 빈발하는 사회를 서구에서는 정실자본주의(crony capitalism)라고 부르고, 우리는 정경유착이라고 부른다. 이런 현상이 심화되면 자원배분이 크게 왜곡되고 결국은 심각한 경제위기와 정치위기가 닥쳐온다.

유승민 의원 등 보수 논객들 뿐만 아니라 학계에서도 많은 비판을 가했다. 비교적 호의적인 경우에도 소득주도성장의 효과가 단기적이거나 미약할 것으로 평가하였다. 예를 들어, 지난 9월 14일 서울대 아시아연구소에서 열린 제4회 국가정책포럼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대논쟁'에서 김세직 교수는 "장기 성장률이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은 단기적 성장을 위한 경기부양 정책에 그칠 수 있다"고 주장했고, 9월 27일 한국경제학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금융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신정부 소득주도 성장 및 증세 정책 평가와 전망' 세미나에서 성태윤 교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단기 경기관리정책으로 평가하며, 정책 효과에 대해서도 제약조건이 많아 기대한 결과를 내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 부채에 대한 기독교적 입장

- 구약에 비추어 본 부채 탕감

김근주 기독교연구원 느헤미야 교수

## 1. 서론: 구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추상적이고 물역사적인 단어나 문장, 문맥이 필요 없는 문장으로 전해진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지닌 대로 역사와 관습, 사고방식에 기반한 틀을 통해 전해졌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진리는 당시의 시대와 관습, 세계관 그리고 문학 양식이라는 '전달 수단'(vehicle)을 통해 표현되면서 구체화되고 역사화되고 현실화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즉, 이러한 '전달 수단'은 하나님의 진리를 현실이 되게 하며 당시의 사람들로 이해하고 납득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말씀을 '육체가 되게 한다'고 할 수 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볼 수 있게 되었다(요 1:14).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진리와 그 진리를 표현해낸 당시의 세계관과 관습, 우주관이라는 '전달 수단'을 함께 담고 있다. 그래서 성경을 오늘 읽는다는 것은 그러한 전달 수단과 결합하여 전해진 본문에서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메시지가 무엇인지 파악하려는 노력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그러한 메시지는 당연히 오늘 우리 시대라는 전달 수단을 통해 표현되고 구체화되어야 한다.

## 율법의 삼구분

오늘날 우리 교회의 구약 이해는 기본적으로 개인적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구약을 철저히 개인화시켜 읽는 데에는, 인간의 실존적인 삶이야 어느 시대이건 비슷하지만 구약 시대의 나라들에 대한 역사나 제도는 원체 후대의 기독교인들에게 낯설다는 점도 이유가 되었을 것이다. 이와 연관해서 생각해볼 것은 구약 율법을 세 종류로 나누는 사고방식이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비롯하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같은 글들은 구약 율법을 제의법, 시민법, 도덕법 셋으로 구분한다. 이에 따르면 제의법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폐지되었고, 시민법은 이스라엘 나라와 연관된 법이기에 그 나라가 사라지면서 더 이상 효력이 없어졌으며, 도덕법은 여전히 보편 타당하다는 것이다.

구약 제사 제도가 완전히 폐지되었다는 점에서 위의 구분이 설득력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더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무엇보다도 제의법과 시민법, 도덕법을 나누는 것 자체가 매우 주관적일 수 밖에 없다. 구약 성경은 어디에서도 율법을 그런 식으로 구분하고 있지 않으며 흔히 말하는 도덕법과 제의법, 시민법이 한데 섞여 있다. 이렇게 섞여 있다는 현실은 고대 이스라엘이 율법 체계에 대해 그런 식의 접근을 전혀 의도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신약 성경 역시 복음서와 바울 서신 그 어디에서도 구약 율법을 그렇게 셋으로 구분하지 않는다. 이런 식의 구분은 타당하지도 않거니와 폐해가 매우 크다. 물론 칼빈은 율법의 제 3사용이라고 해서 신약 시대에도 율법이 성도의 삶의 가르침을 위해 여전히 타당한 말씀임을 강조하고 있기는 하다. 그럼에도 칼빈의 이러한 제 3사용은 도덕법에 국한되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다 보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같은 문서에서는 율법의 제 3 사용에 대한 아무런 언급을 찾아볼 수 없기도 하다. 어느 것이 도덕법인지 객관적 기준 자체가 없는 상황에서 신약에도 의미 있다 싶으면 도덕법이라 분류하는 상황까지 생긴다는 점 자체가 이러한 구분이 부적절함을 잘 보여준다.

이러한 폐해 가운데 주목할 만한 것은 ‘시민법’과 연관된 이해이다. ‘시민법’은 국가로서의 이스라엘과 연관된 법이라고 여겨 이스라엘 나라가 사라지면서 그 “일반적인 원리(general equity)” 외에는 더 이상 효력 없는 법이라 여겨진다. 그로 인해 면제년과 희년을 비롯하여 구약의 재판 제도라든지 올바른 왕정에 관한 말씀들 전부가 본질적인 의미를 잃게 되어 버렸다. 올바른 사회 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와 왕권 같은 말씀들의 사회적 구조적 측면이 모두 사라져 버리니, 이제 남는 것은 이 말씀들을 사사롭고 개인적인 측면에 적용하는 것뿐이라고 할 수 있다. 더 이상 기독교인들은 국가니 나라니 하는 차원에 대해 고려하지 않은 채, 구약과 신약의 모든 말씀을 개인적인 것으로만 풀이해 버린다. 시민법의 의의로 언급된 “일반적인 원리”는 결국 도덕법이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내용일 것을 요구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시민법에 해당하는 영역은 ‘도덕법’이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내용이 되거나 아니면 소위 ‘영적인’ 의미로 재해석된다. 그래서 희년은 나의 죄를 자유케 하신 주님에 대한 묵상으로 바뀌어 버렸고, 재판의 정의와 공의에 대한 말씀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인 된 나를 의롭다 칭하시는 은혜에 대한 묵상으로 곧장 나아가 버린다.

## 시민법의 의의

이상의 내용을 고려할 때, 율법에서 시민법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개인의 구원과 변화 차원을 넘어서는 것임을 명확하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개인 차원의 신앙, 사적 종교를 훌쩍 넘어서게 하는 것은 율법의 시민법 규정들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시민법 규정은 도덕법과 제의법에 모순되지 않고, 하나님 경외라는 공통의 정신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의 구체적 모습으로서의 희년. 구약은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고 소망하게 한다. 막연하게 그리지 않고 구체적 모습으로 시대적 상황과 틀 안에서 그린다. 시민법으로 대

표되는 특정한 사회 구조와 현실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이해할 때, 구약 예언자들의 고발의 맥락도 이해하게 된다. 예언서에 흔히 볼 수 있는 ‘두려워 말라’와 같은 명령은 단순히 개인의 내면을 향한 명령을 넘어, 하나님께서 명하신 나라 전체와 연관된 명령으로 이해해야 한다. 여기에 회년법과 같은 규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체제와 틀이 어떤 것인지를 잘 반영한다. 빛이나 담보와 같은 말씀은 오경에서 ‘법전’이라 불리는 율법 모음집들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러한 법전과 그에 포함된 규정들은 전형적인 시민법이라 할 수 있다. 십계명과 같은 핵심적인 정신은 법전이라는 구체적 사회 현실을 통해 관철되고 구체화된다. 그러므로 빛과 연관된 개별적인 규정들은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올바른 사회라는 체제와 틀이라는 견지에서 이해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빛에 관한 규정은 다시금 개인의 윤리와 선택의 문제로 국한되기 쉽다.

## 고대 이스라엘 사회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과 현실은 구약의 배경인 고대 이스라엘이나 신약의 배경이 주후 1세기 로마 제국 시대에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신약 문서는 기본적으로 매우 적은 수로 이루어진 신앙 공동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구약과 차이가 있다. 오늘날 세상 속에서 ‘부채’의 문제를 다루고자 할 때, 국가나 사회가 배경이 아니라 적은 무리의 신앙 공동체를 배경으로 한 바울 서신으로 대표되는 신약은 공동체나 사회 전체보다는 개인적으로 부채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를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그에 비해 구약은 사회 전체의 시각에서 부채 문제에 접근한다고 볼 수 있다.

주전 8세기 이래 예언자들은 고대 이스라엘 사회를 향해 이전에 없던 강력한 고발과 심판을 선포하며 다가올 새로운 세상을 전했다. 이들의 메시지는 아훼 신앙의 완전히 새로운 영역을 개척한 것이 아니라 이전에 존재했으되 당대의 사람들이 더 이상 효력이 없다 여겼던 고대 율법과 신앙 전통을 생생하게 되살려 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율법”이라는 말로 대표할 수 있는 오경의 규례와 그에 반영된 세상에 대한 이해는 예언자들의 선포의 기반이라 할 수 있다.

오경에 반영된 이스라엘은 지파와 지파가 연합한 체제이다. 열두 지파는 각각 레위인들에게 일정한 거처를 주도록 되었으며, 지파들 사이에 높고 낮음이나 천하고 귀하과의 구별이 전혀 없었다. 오경에 반영된 이스라엘에는 종이 존재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원칙적으로 서로에게 종이 되어서는 안 되었으며, 이스라엘 가운데 머물러 사는 이방인들을 종으로 삼을 수 있었다.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은 대부분 자영농이지만, 어떤 이들의 경제적 형편은 남들보다 나아서 다른 이를 품꾼으로 고용할 수 있었다. 이를 보건대, 빈부격차 자체가 문제시되지는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달리 길이 없는 이들은 자신이 가진 땅을 팔거나 나아가 자신의 노동력을 다른 이에게 제공하는 대신 돈을 받을 수도 있었다. 레위기 규례는 이에 대해 부정적이지 않다. 사실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누군가 나의 땅을 구입한다면, 그 역시 이웃의 곤경에 연대하는 행동이라 볼 수 있다.

오경이 기반으로 하는 경제 현실은 이와 같은 지급자족하는 자영농 체제라고 할 수 있다. 희년과 같은 오경의 규례들은 이러한 자영농 체제에 기반을 둔 것이다. 그러므로 희년 규례를 따른다는 것이 오경이 명령하는 그대로를 지켜 행하는 것일 수는 없다. 고대 사회라는 기본적인 상식과 틀 안에서 오경은 하나님 백성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규정하고 있다. 당연히 오늘날 오경을 적용한다는 것은 오경을 통해 요구되고 주장되는 이념이나 가치가 무엇인지를 살펴 오늘날 상식과 틀 안에서 적용해야 함을 의미할 것이다.

## 2. 부채 혹은 빚

빚 혹은 부채와 관련하여 여러 동사들이 구약 본문에 사용된다. 돈이나 양식을 빌리다, 빌려 주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동사에는 ‘라뵤’(לָוַה), ‘나쇼’(נָשָׂה), 그리고 발음이 같지만 철자가 조금 다른 ‘나쇼’(נָשָׂה) 같은 것들이 있고, 이 세 동사가 모두 30여 회 이와 같은 맥락에서 사용된다. 그리고 ‘이자’를 가리키는 단어로 ‘맛쇼’(מַשְׂכָּ 5:7,10), ‘네쉐크’(חֹל 22:25; 레 25:36,37; 신 23:20; 시 15:5; 잠 28:8; 겔 18:8,13,17), ‘타르비트’(레 25:36; 잠 28:8; 겔 18:8,13,17; 22:12), ‘마르비트’(레 25:37) 같은 단어들 사용되었다. 또한 이러한 동사와 명사가 쓰인 본문에는 대개 ‘담보/전당’ 혹은 ‘담보를 취하다’, ‘전당 잡다’와 같은 표현도 같이 등장한다. 이와 같은 표현들이 널리 쓰인 본문이 오경 율법이라는 점은, 이와 같은 경제 생활이 고대 이스라엘의 일상에서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규례로서의 오경 율법은 이스라엘의 일상 생활과 긴밀히 연결된다. 여호와를 순종하는 삶은 일상의 경제 생활을 통해 구현된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이와 같은 내용이 등장하는 또 다른 본문이 시편이나 잠언이라는 점은, 일상에서의 합당한 경제 생활이 삶의 기본적인 도리로 음미되고 가르쳐졌음을 보여준다. 예언자 역시 이와 같은 현실의 도리를 강조할 뿐 아니라, 이를 행하지 않는 현실을 고발하고 비판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빚을 둘러싼 일상의 경제 현실은 여호와 경외의 본질적인 한 부분을 이룬다.

### 이웃에게 꾸어 주는 자는 복되다

구약 성경은 이웃에게 돈을 빌려 주는 것에 대해 일관되게 칭찬하고 격려한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백성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고(신 28:6)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이 많아지고(28:11) 때를 따라 내리시는 비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미치는 복을 받을 것이며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 꾸지 아니할 것”(28:12)이다. 여기에서 다른 이에게 꾸어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가 받을 복의 하나로 언급된다.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가며 고백하는 탄식과 감사, 찬양을 담고 있는 시편에도 의인의 삶과 관련하여 ‘꾸어 주는 것’이 언급된다. 특히 37편은 불의한 이들이 잘되고 의인은 도리어 고난 당하는 현실을 배경으로 해서 끝까지 여호와를 소망하며 걸어갈 것을 권면하는 맥락에서 의인과 악인의 특징으로 이 ‘꾸어

주는 것을 언급한다.

“악인은 꾸고 값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시 37:21);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 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시 37:26)

‘은혜를 베풀다’라는 표현이 ‘주다’(21절), ‘꾸어 주다’(26절)와 각각 함께 쓰였다는 점에서, 여기에서 ‘주다’와 ‘꾸어 주다’는 동의어처럼 쓰였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언급의 배경은 곤궁에 빠진 가난하고 힘겨운 이웃을 도와야 하는 상황일 것이다. 의인의 삶의 중요한 특징의 하나는 다른 이에게 ‘꾸어 주는 삶’이며, ‘꾸어 주는 것’은 은혜를 베푸는 것이다. 악인의 특징은 다른 이에게 꾸지만 값지 않는다. 다른 이가 베푸는 은혜를 경험했지만, 그것을 값지 않는다. 악인은 단지 돈을 값지 않은 것이 아니라 서로 나누고 돌아보는 삶의 은혜를 값지 않은 것이다. 가난한 이웃의 요청을 따라 꾸어 주는 것은 “의인”의 덕목일 뿐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라면 마땅히 행해야 하는 사항이기도 하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나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네 손을 움켜 쥐지 말고 반드시 네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신 15:7-8)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살아가는 것과 그들 가운데 있는 가난한 형제에게 넉넉히 꾸어 주는 것은 서로 분리되지 않는다. 이렇게 가난한 이에게 꾸어 주는 것은 복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복을 불러오는 일이기도 하다. 다음과 같은 잠언 구절은 그러한 논리를 특별하게 설명한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값아 주시리라”(잠 19:17)

시편 구절에서 보았듯이,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그저 마음 속이나 감정의 어떤 일이 아니라 ‘꾸어 주는 것’으로 구체화된다. 그의 “선행”이라 표현한 것에서도, 단지 마음으로 불쌍히 여긴 것이 아니라 어떤 행동을 가난한 자를 위해 했음을 보여주는데, 구체적으로는 가난한 자를 보고 그에게 필요한 것을 꾸어준 행동일 것이다.

잠언 구절의 논리를 따르면, 가난한 자에게 꾸어 주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논리는 매우 흥미롭다. 먼저, 이와 같은 구절은 가난한 자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드러내신 모습의 하나인 것처럼 이야기한다. 이 말씀은 주린 자, 병든 자, 목마른 자, 나그네 된 자, 옥에 갇힌 자를 돌아본 것이 하나님께 한 것이라는 마태복음과 일치한다(마 25:31-46).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을 하나님께서 값아 주실 것이다. 아울러 이 잠언 구절은 값지 않은 것이 없는 이에게 베풀면 “의인들의 부활시에 네가 값음을 받겠음이라”는 예수의 말씀(눅 14:13-14)과 맥을 같이한다. 그리고 가난한 자

를 구제하는 것은 하늘에 보물을 쌓는 것이라는 신약의 가르침과도 통한다(마 6:20; 19:21; 눅 12:33; 딤후전 6:18-19).

“은혜를 베풀며 꾸어 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시 112:5)와 같은 시편 구절은 앞서 살펴본 시편 37편에 나온 표현과 거의 동일한 표현을 사용하며 꾸어 주는 삶과 형통, 정의를 연결 시킨다. 그런데 112편은 111편과 평행된다. 111편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찬미하고 112편은 그를 경외하는 이의 삶을 노래한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두고 “의”로 찬미하며(111:3), 그를 경외하는 자의 “공의”도 노래한다(112:3). 하나님은 “정의”로 행하시며(111:7), 그를 경외하는 자 역시 그러하다(112:5).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며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신다(111:4-5). 여호위를 경외하는 이 역시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은혜를 베풀고 꾸어 준다(112:4-5). 111편과 112편의 이러한 평행을 고려할 때, 다른 이에게 은혜를 베풀며 꾸어 주는 것은 하나님을 닮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의 백성은 다른 이를 불쌍히 여기며 꾸어 주는 것으로 은혜를 베풀다. 그러므로 꾸어 주는 자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이다.

신명기 본문은 그저 ‘꾸어 주는 것’을 복 받은 삶의 하나로 언급했지만, 이어서 살펴 본 시편 37편, 112편, 잠언 19장의 구절은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꾸어 주는 것’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 가난한 이웃에게 꾸어 주는 것은 그 자체로 복 받은 삶이며, 여호와께 꾸어준 것이기에 여호와께로부터 값있는 복을 불러오는 삶이다. 그렇게 꾸어주는 것은 그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신 여호위를 닮아가는 삶이다. 그러므로 경제적 곤경에 빠진 이들에게 돈을 빌려 주는 것은 그 자체로 선한 일이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누군가가 곤경에 빠졌는데 그 어느 곳에도 돈을 융통할 수 있지 못하다면, 그 사회는 하나님과는 거리가 멀다 할 수 있다. 가난한 자를 위한 대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구체적이고 외적인 표현이다.

가난한 자를 위해 꾸어 주는 측면은 이와 같이 여호와 경외와 직접적으로 연관된다. 그러나 여기에는 보완하여 고려할 측면이 수반된다. 누군가에게 돈을 빌린다는 것은 빌리는 입장에서는 참으로 다급하며 그리 즐겁고 행복한 경험이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왜냐하면 누군가에게 빚을 진다는 것이 대부분의 사회에서 단지 돈을 빌린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음에 살펴볼 것은 ‘빛의 힘’에 대한 것이다.

## 빛의 힘

돈을 그저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빌린다고 하는 것은 값값다는 것을 전제한 것이다. 앞서 살펴본 시편 구절에서 악인의 특징은 빌려놓고 갚지 않는 자로 규정된다. 돈을 빌릴 때 갚을 것을 전제하고 그렇게 갚을 것을 확인하고 확실히 하기 위해 작동하는 것이 담보일 것이다. 담보를 잡혀 꼭 갚겠다고 하면 서까지 돈을 빌리게 되는 것은 그렇지 않고는 견디기 어려운 경제적 곤경이 있기 때문이다. 빛이 지닌

힘이 작동하는 까닭은 근본적으로 이와 같은 경제적 위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한쪽은 위기 상황에 처해 있고 다른 한쪽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일반적이다 보니, 돈을 빌리고 빌려 주고 사이에 권력이 발생하게 된다. 다음과 같은 구절은 이를 단적으로 표현한다.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빛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잠 22:7)

이 구절에서 부자와 채주, 가난한 자와 빛진 자는 서로 대응한다. 잠언 구절에 따르면, 채주와 빛진 자의 관계는, 양자의 자유로운 합의에 따른 경제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그저 돈을 빌려 주고 빌린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 지배와 종속의 관계이다. 이에 따르면, 빛은 단순히 돈이 아니라 상대를 지배하고 장악하며 좌우하는 권력의 기반이다. 채주는 자신이 준 빛에 근거하여 빛진 자들을 지배한다. ‘빌려준다’를 의미하는 동사 ‘나שא(nš)’가 ‘강탈하다’는 의미로 쓰이기도 하는 것(시 89:22)도 이와 연관될 것이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빛이 있었고 도무지 갚지 못하게 된 이는 자신의 채주가 살고 있는 영역을 떠나는 것 말고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던 다윗에게 빛진 자들이 도망쳐 왔다는 것(삼상 22:2)은 빛진다는 것과 상대의 종이 되는 것이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살기 위해서는 그의 종된 것으로부터의 탈출, 달리 말해 그의 ‘나라’로부터 떠나 다른 ‘나라’로 옮겨가는 것 밖에 길이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 점에서 도망 다니는 다윗, 아들람 굴의 다윗은 ‘다른 나라’, ‘다른 세상’을 상징할 것이다.

다른 이에게 돈을 빌려준 채주는 그로 인해 권력을 얻게 된다. 사람들로부터 박해와 미움을 받는 예레미야가 “내가 꾸어 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마는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렘 15:10) 고백할 때, 여기에는 채주에 대한 당시의 인식이 깔려 있다. 고통과 괴로움을 겪는 시편 기자가 자신을 대적하고 괴롭히는 원수에 대해 기도할 때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되길 구하는 것(시 109:11)에서도 채주의 혹독함과 권세를 엿볼 수 있다. 빛을 주었다는 이유로 채주는 상대의 모든 것을 장악하고 지배하며 소유한다. 열왕기하 4장에서는 이렇게 빛이 있었으나 남편이 죽음으로 인해 벼랑에 서게 된 가정의 이야기를 볼 수 있다. 미망인은 엘리사를 찾아와 “이제 빛 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아뢴다(왕하 4:1). 빛으로 인해 자식이 팔려가는 현실은 이사야서에서도 볼 수 있다(사 50:1: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머니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채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귀환 공동체 내부에서도 경제적 곤경으로 인해 빛을 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하자 자식이 상대방에게 종으로 팔려 가게 된다(느 5:5).

상대에게 빌려준 것은 돈이었지만, 이를 갚지 못하자 상대방의 아이를 데려간다. 빛진 자의 자녀는 그가 갚아야 할 돈과 맞바꾸어진다. 빛이 사람까지도 재산 혹은 돈으로 여기게 만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빛



은 단순히 돈이나 경제 거래가 아니라 사람이 서로를 대하는 관계와 생각을 바꾸어 버리는 ‘살아있는 권세’라고 말할 수 있다. 그 힘은 사람까지도 재산으로 만들어 버린다. 그러므로 빛의 힘은 한마디로 사람의 생각과 사상을 바꾸는 힘이며, 그 기반은 주인됨과 종됨이라는 권력 문제이다. 빈부의 문제, 빛의 문제는 누가 우리의 주인인가와 연관된다. 빈부의 문제를 그저 사회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현실로 보지 않고 신앙의 근본을 뒤흔들 주되심, 권력의 문제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경에 빛에 관한 언급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 3. 사람의 얼굴을 한 빛

앞서 언급했듯이 경제적 곤경이라는 현실이 존재하는 한, 빛은 사라질 수 없는 현실이다. 사람이 살기 위해 빛을 내되 일단 빛 관계가 성립하면 그 빛은 사람을 재산으로 만들어 죽게 만든다. 가난한 이들에게 돈을 빌려 주는 것은 하나님을 본받는 행동이되, 실제 현실에서는 빛에 근거하여 상대방의 모든 것을 장악하고 지배하는 수단이 된다. 이를 고려하면, 구약이 빛에 대해 마련한 이런저런 조치들은, 어려운 이에게 돈을 빌려주는 긍정적 측면을 보존하면서 빛이 지닌 힘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라는 취지에서 이해할 수 있다. 빛이 사람마저 돈으로 보게 만들지 않도록, 사람을 사람으로 존중하도록 하는 것이 구약 본문에 담긴 빛 인식의 기본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구약 본문은 빚질 때 발생하게 되는 담보와 이자에 대해 명확하게 기준을 제시한다. 아울러 담보와 이자를 넘어 사람의 삶 전체를 옥죄게 되는 빛 자체의 탕감 역시 구약 본문이 제시하는 해결책의 하나이다.

#### 담보

사람 사이에 대부가 발생할 때, 반드시 상환하겠다는 뜻의 표현으로 담보가 발생한다. 이러한 담보는 빌리는 이가 꼭 갚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기에, 빌리는 이에게 없어서는 안될 결정적이고 중요한 것, 빌리는 돈보다 더 가치 있다 여겨지는 것이어야 담보로서의 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가난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렸을 경우, 그러한 가난이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개의 경우 제대로 상환할 수 없게 되고, 담보로 잡혔던 것을 찾아올 수 없게 된다. 어떻게든 갚게 하기 위해 중요한 것으로 담보를 설정했지만, 쉽게 갚을 수 없으므로 인해 그 중요한 담보를 되찾지 못한 채, 담보의 중요성이 커질수록 삶이 더욱 참담하게 된다. 그래서 담보가 중요할수록 빚진 자는 채주의 손아귀에 잡힐 수밖에 없다. 그 때문에 구약 본문은 담보 잡는 것에 대해 매우 세밀한 규정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출 22:26-27);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위쪽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라”(신 24:6); “네 이웃에게 무엇을 꾸어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네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네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 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네 공의로움이 되리라”(신 24:10-13); “너는 객이 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일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신 24:17-18)

위 본문에 따르면 돈을 빌려주는 대신 그 담보로 전당물을 취할 때 무엇이 전당물이 될 지를 결정하는 것은 채주가 아니라 돈을 꾸는 사람이다. 이런 규정이 존재한다는 것은 실제 현실에서 채주가 채무자의 집에 멋대로 들어가서 마음대로 물건을 가져 나왔을 것임을 반영할 것이다. 돈을 빌려 주었다는 이유로 빌린 이의 집으로 들어가 자신이 전당물을 선택할 수 없다는 신명기 규정은, 돈을 빌려준 것이지 상대방의 삶을 주관하거나 장악하고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을 얻은 것이지 않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규정은 돈을 빌리는 이의 인권과 존엄을 보호하며, 돈을 빌린 것과 관련하여 모멸감을 갖지 않게 한다. 아울러 전당물로 취할 수 없는 것은 맷돌과 과부의 옷이다. 이 두 가지는 생존의 필수적인 수단이라는 점에서, 돈을 꼭 갚겠다는 가장 결정적 신호라고 할 수 있고 담보로서의 효과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지만, 율법은 이것들을 담보로 취하는 것을 단호하게 금지한다. 출애굽기 22장과 신명기 24:10-13을 볼 때, 과부가 아닌 다른 이들의 경우 옷을 전당 잡을 수 있었다. 그러나 그 경우라도 해가 지고 밤이 되면 옷을 가난한 이에게 돌려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옷은 생존과 연관된 필수적인 것이 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규정은 생존과 연관된 것을 빚졌다는 이유로 마음대로 취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 빚은 사람을 지배하고 좌우하게 하지만, 율법은 그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차단한다. 그는 돈을 빌린 것이지, 생존이 차압당한 것이지 않다. 가난한 자의 생존을 위해 돈을 빌려 준 대가로 상대의 목숨을 전당 잡는 것은 부당하며 금지된다. 돈을 빌렸다고 해서 빌린 자의 집에 마음대로 들어가서는 안된다. 사람의 존엄을 무시하는 것은 금지된다. 가난한 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돈을 빌려준 것인데, 그 대가로 상대의 인격을 무시하고 모멸감을 주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출애굽기와 신명기 본문은 담보에 대한 말씀을 애굽에서의 종 되었던 경험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연결시킨다. 이에 따르면, 이웃에게 돈을 꾸어 주고 담보에 대해 올바르게 행하는 것은 자비로운 하나님, 그들을 건지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본질적 측면이다. 그래서 전당 잡은 옷을 저녁에 돌려주지 않고 지니고 있는 것은 나라 전체를 심판하는 근거가 된다(암 2:8; 참고. 욥 24:3,9). 그들의 신앙이 그들을 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실이 그들을 건진다. 그들의 신앙은 이렇듯 담보에 대한 그들의 행실로 드러난다.

## 이자

빚이 사람을 내리 누르는 고통이 되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이자이다. 빚을 내야 하는 절박함이 클수록 더 많은 이자를 지불해야 하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렇게 높은 이자를 지불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 모든 것이 수요와 공급이라는 시장 법칙에 지배된다는 자본주의적 사고방식은 수요자의 절대적인 필요의 정도와 돈을 활용해서 수익을 더 크게 올리려는 제공자의 탐욕이 만나 균형을 이룬 지점에서 높은 이자율이 형성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성경은 이에 대해 무척 단호한 입장을 지니고 있다. 성경이 시장에 맡겨 두지 않는 영역이 여럿 있거니와(대표적인 것으로 토지 거래),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자에 대한 개입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자에 대해 다루는 레위기 25:35-38을 살펴보자. 이 본문은 희년을 다루는 큰 맥락(레 25:8-55) 가운데 속한다. 특히 25:35부터는 다음에서 볼 수 있듯이 이스라엘 가운데 가난의 심화에 대해 단락별로 다룬다.

25절: 네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 얼마를 판 경우

35절: 네 형제가 가난하여 너와 함께 있는 그의 손이 흔들리는 경우

39절: 너와 함께 있는 네 형제가 가난하여 자신을 너에게 판 경우

47절: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이 부유하고 그와 함께 있는 네 형제가 가난하여 그에게 자신을 판 경우

47절은 극심한 빈곤의 또 다른 현상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살고 있는 이방인에게 몸이 팔리는 경우를 다루는데, 이 역시 빈곤의 심화의 또 다른 측면을 보여준다. 가난의 수렁에 빠졌을 때, 사람들은 처음에는 가진 땅을 팔지만 그것으로도 가난을 벗어나지 못한다. 그래도 아직까지 그는 독립적인 자영농이지만, 35절에 가면 더 이상 그렇지 못한 것을 볼 수 있다. 여기서 ‘너와 함께’는 ‘너의 주관 하에’를 의미한다(가령, 25:6,23에서처럼: Milgrom: 2205). 35절은 이 사람이 다른 이스라엘 백성의 주관 하에 놓인 것을 보여주며, 그 상태에서도 여전히 삶이 어려워 ‘그의 손이 흔들린다’. 아마도 그는 돈을 이미 빌렸고 그것을 갚을 능력도 처지도 아닌 상태가 되었다고 여겨진다. 36-37절은 어려움에 빠진 형제에게 이자와 이익을 위해 돈이나 양식을 꾸어 주지 말 것을 명령한다. 여기에서 “이자”로 번역된 표현은 ‘네 쉼크’로 아마도 빌려주면서 일정한 이자를 깎고 주는 ‘선이자’ 같은 것이었으리라 여겨지며(이 명사는 ‘물어뜯다’를 의미하는 ‘나샤크’ 동사에서 비롯된 것으로, 돈을 빌려 주면서 ‘먼저 물어 뜯고’ 차액을 주었으리라 여겨진다: HAL), “이익”으로 번역된 “타르비트”는 돈을 갚을 때 붙여서 갚아야 하는 이자였을 것이라 여겨진다(Milgrom: 2209-2210).

기본적으로 무이자 대부는 레위기 본문에서 보듯 가난한 자를 위한 배려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저런 이유로 가난의 나락에 빠진 이웃이 손을 내밀 때에, 빌려준 돈의 이자를 받는 것은 상대의 곤경을 이용한 자기 이익 추구이다. 출애굽기 22:25 역시 가난한 자에게 이자를 받는 것을 금지한다. 출애굽기 22장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빌려 주는 것에 관한 본문(출 22:25-27)은 이방 나그네, 고아, 과부를 해롭게 하거나 압제하지 말라는 말씀(출 22:21-24)과 나란히 놓였으며, 이 두 단락 모두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리라는 말씀(22:23,27)을 지니고 있어서 서로 연결된다. 가난한 자의 곤경을 이용하여 자신의 유익을 취할 때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이의 부르짖음을 듣고 이익 취한 이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와 같은 규정은 에스겔서와 시편에서도 반영되어 있다. 에스겔에게 있어서 구원의 길은 오직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이에게 열려 있다(겔 18:9,19-20; 33:7-20). 여기서 “정의와 공의”의 내용 가운데 우상 제물을 먹지 않는 것과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않는 것이 있을 뿐 아니라,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 주는 것’과 ‘가난한 이웃에게 이자 받지 않는 것’도 있다(겔 18:6-8,11-13,15-17; 22:12; 33:15). 자세히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여기서 “저당물”은 옷이나 맷돌과 같은 필수적인 항목들이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에스겔서는 담보를 잡을 때 규정에 따라 행하는 것과 가난한 이웃의 필요에 따라 돈을 빌려 줄 때 이자 받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본질적이며 필수적 측면임을 분명히 한다. 여호와께로 돌아왔다는 것은 이와 같은 사회경제적 현실에서의 실천을 필수적으로 포함한다. 이러한 내용을 보여주는 또 다른 본문으로 시편 15편을 들 수 있는데, 이 시는 ‘성전 입당송’으로 알려져 있다. 성전에 들어갈 때에 제사장과 예배자가 이와 같은 내용을 주고 받았으리라 여겨지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의 삶의 모습으로 언급되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다(15:5). 여기에서도 꾸어주는 것은 좋은 일이되 “이자를 받으려고” 꾸어 주는 것은 규탄된다. 에스겔과 시편의 예는 정의와 윤리가 단단히 결합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나아가, 잠언의 한 구절은 이자로 쌓은 부는 결국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의 몫이 될 것이라 표현하기도 한다: “중한 변리(히, ‘이자와 변리로’)로 자기 재산을 늘이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잠 28:8). 이 본문에서 이자 받는 자는 가난한 자 불쌍히 여기는 자와 대조되어 있다. 이자 받는 것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 행동이다.

가난한 이웃에 대해 이자 받지 말라는 규정이 신명기에서는 모든 이스라엘 사이에 지켜야 할 규례로 확장된다.

“네가 형제에게 꾸어 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네가 꾸어 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네 형제에게 꾸어 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신 23:19-20)

여기에서 형제에게 이자 받는 것의 금지와 여호와께서 주실 땅에서 받게 될 복이 연결된다. 언약 공동체 안에 속한 사람으로서 상대의 곤경을 이용하여 자신의 유익을 취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이 이러한 이자 금지의 사고라고 볼 수 있다(Josephus, Jewish Antiquities. 4.266).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는 것과 서로에게 이자 받지 않는 것은 이렇게 경제적 표현으로 구체화된다.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본문을 비롯한 구약 본문은 이자 금지라는 매우 강경한 판단을 내린다. 그런데 이와 같은 규정은 이스라엘이 존재했던 고대 중동의 현실과 비교할 때 매우 독특하다. 왜냐하면 다른 고대 중동 문헌은 모두 일정하게 이자를 받는 것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앗수르바니팔(주전 668-633)의 도서관에서 발견된 태양신 찬가(Hymn to the Sun-God)에서는 ‘심한 비율로 돈을 투자하는 이는 그의 재산을 잃게 되되 관대한 비율로 투자하는 이는 사마쉬를 기쁘게 하며 생명이 풍성하리라’ 약속되고(ANET: 388), 주전 1550-950년 어간의 애굽 “사자의 서”에 있는 한 대목은 자신이 이자를 탐하지 않았음을 신에게 이야기하는 사람을 보여준다(ANET: 35 B14)는 점에서, 이자를 받는 것에 대한 어떤 부정적 인식의 흔적을 볼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고대 중동 문헌은 적절한 이자를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 이자 없는 대출에 관한 예가 언급되기는 하지만, 이자를 금지하는 법은 현재 전하는 문서들 가운데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Baker: 37-38). 에쉬누나(Eshnunna) 법전에서는 은의 이자율은 20퍼센트이고 보리의 이자율은 33퍼센트(ANET: 162)이며, 주전 18세기를 배경으로 한 함무라비 법전에서도 은의 이자율은 20퍼센트(ANET: 169)이다. 이보다 더 많은 이자를 받았을 경우 벌려준 것이 몰수당한다고 규정된다(ANET: 169). 엘레판틴(Elephantine) 문서에서 이자가 있는 대부분 언급을 볼 수 있고, 다른 주전 2세기 문헌에는 유대인들 사이에 1년 내에 갚기로 하고 무이자 거래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제 시간 내에 못 갚을 경우 이자가 발생한다(Neufeld: 411). 엘레판틴 문서의 경우 이자율이 60퍼센트까지 높은 경우도 있다(Neufeld: 355-412; 추가적인 예로, Baker: 38 각주 30을 보라). 이상을 생각하면, 일체의 이자 금지는 이스라엘 신앙의 참으로 고유한 특징이라 볼 수 있다.

구약 신앙은 왜 이자 받는 것을 금지했을까? 달리 말해, 왜 수메르나 바벨론 같은 고대 국가들은 이자가 당연한 것으로 되었을까? 이에 대해 오래 전에 쓰였지만 여전히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연구라고 할 수 있는 논문에서 뉴펠드(E. Neufeld)는 도시 국가의 진전으로 그 차이를 설명한다(407-409). 도시 국가가 진전된 문화에서는 상업 거래 역시 발달했을 것이며, 그와 같은 사회 구조에서 이자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진 반면, 지파간 연대와 형제애가 중요한 사회에서는 이자가 금지되었다는 것이다(Neufeld: 410). 그에 따르면, 이슬람이 생겨나기 이전 아랍 세계에서도 이자가 금지되었으며 이 역시 당시의 부족 관계에 기반한 현실을 반영한다(Neufeld: 408-409). 이와 관련해 외국인에게 이자 받는 것을 허용

한 것은 그렇게 돈을 빌리는 외국인은 상업적 목적으로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 사는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Lundbom: 665; Neufeld: 361).

언약 공동체와 이자 금지가 연결되었다는 점에서, 이스라엘 땅에 들어온 외국인은 언약 밖에 있다는 점에서 이자 금지 규정의 대상이 아니었다고 볼 수 있다. 외국인에게는 이자 받아도 된다는 규정은 외국인을 차별하는 것에 초점이 있다기보다, 언약 백성, 언약 공동체의 현실이 어떠한가에 대한 강조에 초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사실, 오경 곳곳에 외국인을 위한 자비 규정이 있다. 모퉁이를 남기라는 말씀(레 19:9-10)과 안식년의 소출에 관한 말씀(25:6)과 같은 세부적인 규정뿐 아니라, 근본적으로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낳은 자 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는 명령(레 19:34)은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외국인의 생존과 풍성한 삶을 보장한다고 할 수 있다.

느헤미야 5장은 성벽 재건 공동체의 내부 갈등을 다룬다. 흉년으로 인해 자신들의 집과 포도원 등을 저당 잡히어 돈을 빌려야 했으나 페르시아에 세금을 내느라 다 써야 했고, 이제는 자녀들까지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다고 탄식하는 가난한 이들의 모습(느 5:1-5)은 외부적 환경이 어떻게 가난의 수레바퀴를 끝도 없이 굴러가게 하는지 잘 보여준다. 공동체 바깥에서 산발랏과 도비야 같은 이들이 끊임없이 성벽 재건을 방해하고 무산시키려 하는 와중에, 공동체 내부의 경제적 갈등은 참으로 다루기 어려운 문제였을 것이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깊이 생각한 후에 귀족과 민장을 따로 불러 “높은 이자”(여기에 쓰인 히브리말 ‘맛샤’는 기본적으로 ‘짐, 부담’을 의미한다. 돈을 빌려준 것과 관련한 ‘부담’이라는 점에서 원금에 부가된 이자라고 볼 수 있다. 개역이 이를 ‘높은 이자’로 옮겼지만, 높은 이자가 문제가 아니라 이자 자체가 문제라는 점에서 이러한 번역은 수정되어야 한다) 받는 것에 대해 규탄할 뿐 아니라 전체 공동체가 모이는 대회를 열어서도 그들을 친다(5:6-7). 느헤미야가 보기에 이러한 현실은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지 않았고(5:9), 그는 저당 잡은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을 즉각 돌려주고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백분의 일”을 돌려보낼 것을 촉구한다(5:11).

빛으로 인해 자식이 종으로 팔리게 된 과부의 부르짖음(왕하 4:1)과 역시 빛으로 인해 모든 것이 저당 잡히고 자식까지 팔아야 하는 가난한 이들의 부르짖음(느 5:1)은 압제와 학대, 빛에 내몰린 가난한 이들의 부르짖음(출 22:23,27)과 흡사하다. 과부의 부르짖음에 엘리사가 응답했고, 가난한 이들의 부르짖음에 느헤미야가 응답했으며, 출애굽기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에 응답하신다고 전한다. 빛과 연관된 조항이 앞에서 본대로 오경의 3대 법전(성결 법전 레 25:36-37; 언약 법전 출 22:25-27; 신명기 법전 신 23:19-20; 24:6,10-13,17-18) 모두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으로도 그 중요성을 잘 보여준다. 엘리사와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개인의 경제적인 문제로 치부하지 않고 응답했고, 오늘 우리 교회 역시 우리 사회 안에 있는 빛 문제에 진지하게 응답해야 할 것이다.

서로를 지탱하고 연대하는 공동체는 이스라엘의 특징이며 본질이다. 누가 남고 누가 모자란다면 상대의 모자람을 이용해 돈을 벌지 않고 무이자로 빌려준다(Baker: 38). 그 점에서 이와 같은 규정은 바울이 이야기하는 ‘균등하게 하는 원리’(고후 8:14-15)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 신명기가 출애굽기와 레위기의 가난한 자를 위한 무이자를 모든 이스라엘로 확장했지만, 둘 사이에 근본적인 충돌 같은 것은 실제로 없을 것이다. 부자가 돈을 빌리는 경우는 곤경 때문이라기보다 투자를 위한 것일 가능성이 크고, 이 경우 오경이 말하는 것과는 다른 경우였을 것이다. 이 점이 신약 성경에서 이자 받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언급(마 25:27)의 맥락일 수 있다.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해질 뿐이라는 구절(잠 22:16) 역시 이와 연관될 것이다(힘있는 자에 꾸어 주지 말라는 집회서 8:12-13도 같은 맥락이다).

대부는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게 거의 유일한 살 길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대부 자체는 문제되지 않으며 권장된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이자를 받는다면 상대의 곤경을 이용해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것이 된다. 그런 이익을 취하더라도 어려움에 빠진 이들은 지푸라기도 잡는 마음으로 빌릴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자 금지법은 가난한 자의 처지를 깊이 이해한 규정이라 할 수 있다. 얼마를 내고서라도 빌려야 할 터인데, 율법은 아예 이자를 받지 말 것을 명확히 규정한다. 그러므로 무이자 대출은 서로가 형제이며 함께 연대해야 함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이 고대 다른 나라에 없었다는 점은, 이스라엘이 서로 연대하는 공동체로 부름 받았음을 특별하게 표현한다. 하나님 백성 공동체의 특별함은 무이자 대출로 구체화된다.

## 빛의 면제 혹은 탕감

신명기 15:1-11은 매 칠 년 끝마다 빛을 탕감하는 면제년을 규정한다. 어떤 빛이 얼마나 있었든지 면제년이 되면 모든 빛에 대해 면제가 선포된다. 면제년에 대한 규례는 면제년이 가깝다는 이유로 이웃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으려는 이들에 대한 경고로 보완된다(15:7-11). 이와 같은 규례는 가난한 이들이 면제년을 이용해서 그렇게 필요 없는 데도 돈을 더 빌릴 ‘도덕적 해이’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은 채, 가난한 이들의 필요에 대해 면제년을 이유로 선뜻 빌려주지 않으려는 이들에 대해서만 경고한다는 점에서 매우 이색적이다. 이러한 경고 규정의 존재는, 언약 공동체로서의 이스라엘은 서로의 곤경과 필요를 보충하고 메우는 존재임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이에 따르면, 서로 연대하며 서로 지탱하는 것이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근본적 이유이다.

신명기 31장은 면제년 초막절에 모세가 이룬 모든 율법을 낭독할 것을 명령한다(31:9-13). 초막절은 모든 농사 소출을 거두어 저장한 후에 지키는 명절이면서(신 16:13-15),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초막에 거주했던 것을 기념하는 명절이기도 하다(레 23:39-43). 그런 점에서 초막절은 언약 공동체로서 이스라엘의 새 출발,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절기라고 할 수 있다. 신명기 31장은 면제년 초막절과 율법 낭독을 하나로 연결시킨다.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은 초막절로 대표되는 새 출발에 낭독하며 기억하고 기

념해야 할 내용이다. 그리고 그러한 새 출발은 단지 정신적인 새 출발이 아니라 모든 빛이 탕감되는 새 출발이어야 한다. 빛을 간직한 채 선언되는 새 출발은 결코 새 출발일 수 없다. 이것은 죄를 사하는 속죄일에 토지와 몸의 자유가 회복되는 희년이 선포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볼 수 있다. 죄 사함과 새 출발은 토지의 회복, 빛의 탕감, 몸의 자유와 분리될 수 없다. 이러한 내용이 분리된다면, 구약 신앙은 몸은 여전히 억압과 빛에 눌린 채 정신적인 자유함을 누리는 지극히 관념적이고 사람을 속이어 환상 속에 살게 하는 거짓 가르침이 되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빛과 죄가 헬라어에서 같은 단어(“오페일레마”)로 표현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적 특징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면제년은 빛을 지고 살아가는 것이 정당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7년마다 반복된다는 것은 면제년이 신학적 중요성을 지닌 초치임을 의미할 것이다. 그리고 7년 마다의 반복을 통해 새 출발을 제도화한다고 볼 수 있다. 일곱 번의 7년 후에 오게 되는 희년 역시 전적으로 동일한 의미를 지닐 것이다. 빛을 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 남의 종살이하는 현실, 내가 경작할 수 있는 땅이 없어진 현실이라는 점에서, 희년은 면제년이 의도한 것을 궁극적으로 성취하게 한다. 땅이 돌아오지 않고 노동력의 자유가 없다면, 빛의 탕감은 일시적인 해결일 뿐, 궁극적인 해결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면제년과 희년은 사람이 누려야 할 자유를 구체적 사회 제도를 통해 구현한다고 볼 수 있다.

## 결론


사람 사는 세상에서는 원칙적으로 빛을 지게 되는 현실이 있기 마련이다. 빛은 사람의 인격을 지배한다. 이에 대해 구약 성경은 담보를 잡는 것에 대한 세밀한 규정으로, 그리고 이자 받지 말라는 규정으로 빛이 지닌 지배력을 약화시킨다. 나아가, 구약 율법은 정기적으로 반복되는 면제년을 통해 빛을 탕감하여 사람이 빛에 지배되지 않도록 제도화한다. 하나님이 자유케 하셨다는 선언은 다른 사람이나 하나님 아닌 그 무엇에도 종 되지 않는 것과 연결된다. 그래서 빛으로 인해 채주의 종이 되지 않게 하는 여러 규정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 선포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신명기의 면제년 규례는 이와 관련하여 궁극적으로는 ‘너희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는 선포에까지 나아간다(신 15:4-5). 언제나 가난한 자가 있기 마련인 현실 위에서 이러한 선포가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가난이 “너희” 즉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규례들과 제도들을 통해 공동체적으로 해결되고 해소된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가난한 자가 없어지는 것은 절로 되는 일이 아니라 면제년으로 대표되는 제도가 그 사회 내에서 실천될 때 이루어지고 확립되는 것이다.

구약이 그리고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는 서로가 어려워졌을 때 기꺼이 꾸어 주는 나라, 빛으로 인해 전당을 잡을 때에도 빛진 자를 지배하지 않는 행동을 취하는 나라, 이웃에게 돈을 꾸어 주되 이자를 받지 않는 나라, 그리고 정기적으로 빛이 탕감되어 과거에 매이지 않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나라이다. 구약은 하나님 나라가 관념적이지 않고 구체적이며 일상의 현실과 결합되어 있음을 생생하게 보여주며 ‘시



민법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통해 구약의 이상이 개인의 세계가 아니라 함께 서로 책임지고 연대하며 살아가는 세상임을 보여준다. 구약이 그리는 하나님 나라와 가까운 모습으로 마태복음에 나오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마 20:1-16)를 생각해볼 수 있다. 아마도 개인의 능력으로 인해 가장 늦게 고용되어 포도원에서 일했던 이도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는 한 데나리온을 받을 수 있다. 한 데나리온이 없다면, 이 노동자는 하루의 삶을 제대로 영위할 수 없을 것이며 빛을 쬐야 하고 빛에 매여 제대로 된 삶을 이룰 수 없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빛에 대한 접근은 한 데나리온으로 대표되는 모든 이에게 보장되는 기본 소득에 대한 논의와도 맞닿는다고 할 수 있다.

고대 이스라엘에는 오늘날과 같은 주식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 신용 대부를 이용한 기업 같은 것도 찾아볼 수 없다는 점에서, 성경 본문으로 오늘날의 대부업이나 은행의 대출과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기는 어렵다. 이와 얼핏 비슷한 것이 있다면 예수께서 예를 드신 돈을 빌려 주어 이자를 받는 일을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마 25:27). 신약 본문은 이자 받는 것에 대해 그리 개의치 않는다. 어떤 가치가 변화된 것이 아니라, 고대 이스라엘과 신약 시대 팔레스타인이라는 변화된 사회적 현실, 도시화가 진전된 사회적 현실이 이자에 대한 이와 같은 변화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고대 이스라엘은 재산을 더욱 증진시킬 목적으로 기업형 대부를 찾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으며, 구약에서 대출은 거의 전적으로 가난한 자의 필요였다고 할 수 있다. 그에 비해 도시화가 진전된 신약 시대에는 경제적 이익 증진을 위해 돈을 빌리는 경우가 존재했다고 볼 수 있다. 가난한 자에 대한 구제를 강조하는 본문들, 되갚지 못하는 이에게 베푸는 선행을 강조하는 본문과 함께 고려할 때, 신약 본문은 이자를 합법화시킨다기보다 상업적 목적의 이자는 허용되되 가난한 이웃에 대하여 함께 나누는 삶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성경이 관심을 가진 것은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가난한 자들과 연관된 부채와 이자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의 변화되고 복잡하게 분화된 사회에서 구약 율법은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 그러나 구약이 명확히 촉구하는 것은 서로 연대하고 서로 책임지는 공동체이다. 가난을 개인의 문제로 돌리지 않고 모두의 문제로 감싸 안는 것이 무이자 대출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공동체 안에 균등케 하는 원리이기도 하다. 고대 이스라엘에만 이와 같은 무이자 대출 규정이 있었다는 점은, 신앙 공동체의 특별함을 경제적 연대 공동체로 구체화시킨 것이라 볼 수 있다. 어느 시대에나 신앙 공동체는 특별한 신앙의 가치라는 추상을 각각의 시대의 구체적 현실로 표현하고 실천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 참고문헌

David L. Baker, "Safekeeping, Borrowing and Rental", JSOT 31 (2006), 27-42.

Michael Fishbane, Biblical Interpretation in Ancient Israel. Clarendon Press, 1985.

W. Köhler-L. Baumgartner, Hebräisches und Aramäisches Lexikon zum Alten Testament. Brill, 1967 (=HAL).

Jack R. Lundbom, Deuteronomy. A Commentary. Eerdmans, 2013.

Jacob Milgrom, Leviticus 23-27. Anchor Bible 3B; Doubleday, 2001.

Edward Neufeld, "The Prohibitions against Loans at Interest in Ancient Hebrew Laws", HUCA 26 (1955), 355-412.

James B. Pritchard (ed.), Ancient Near Eastern Texts Relating to the Old Testament. 3rd edition with Supplement.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9 (=ANET).

# 온누리교회 부채탈출 119

- 부채해방을 위한 실천사례 : 교회(1)

오종규 온누리교회 사회선교부 사회책임팀 총무

## 부채문제와 교회의 역할

어린 시절 나는 부유하게 자라지 못했다. 온누리교회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작은 동네 교회를 다녔다. 하지만 우리 집에는 남들이 모르는 소소한 행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났다. 오늘날 나는 어린 시절 부모님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벌고 있지만 만족하지 못하고 더 가지지 못해 불안할 때가 있다. 때로는 어린 시절 소소한 행복을 잃어버린 것 같다.

주위를 둘러보면 분명 20년 전 혹은 30년 전 보다 훨씬 경제적으로 성장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약자들이 차고 넘치고 있다. 경제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기도 전에 대학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알아보는 학생들,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가정을 꿈꾸며 결혼을 했지만 어마어마한 전세 값 앞에서 고민하는 신혼부부들, 이제는 경제력 싸움이 되어 버린 자녀교육문제로 씨름하는 부모들, 내 집 마련, 안정적인 노후준비 등 우리는 한시도 돈에 대한 걱정 없이 사는 것이 불가능 한 시대를 살고 있다.

기독교인들도 돈에 자유롭지 못하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돈에 대한 걱정 없이 살아간다는 것이 힘들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상 하리만큼 돈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간섭이 없는 영역으로 생각하거나 무관심하다. 십일조를 드리는 것 또는 일정한 헌금을 하는 것으로 돈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다 한 것처럼 치부해 버리기 일쑤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돈이 있어야 행복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소비만이 미덕’이고, ‘좋은 차 또는 ‘좋은 집’ 있어야 멋진 삶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 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 풍조 속에서 부채를 짊어지고서 라도 소비를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처럼 되어 버리고 있다. 우리는 이미 소비주

의라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작년 말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1,257조 3,000억 원으로 약 400조원이 되는 국가예산대비 3배가 넘었다. 부채는 더 이상 개인과 사회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문제가 되어 버렸다.

## 부채문제와 교회의 역할

부채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문제가 된지 오래다. 부채를 단순히 타인의 문제로 치부하면 안 되는 시대가 온 것이다. 따라서 부채로부터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교회는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해야 한다.

첫째, 성도들에게 돈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시켜야 한다.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주신 돈도 크리스천들이 관리해야 할 영역임을 알려야 한다. 많은 성도들이 물질에는 관심이 없다며 고개를 젓는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단순히 아끼고 저축하는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가치관과 신앙관에 기초한 재정, 부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둘째, 이미 부채로 어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을 도울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부채자들을 돕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신용불량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고, 개인회생, 파산신청자도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통계에 의하면 개인회생, 파산신청자 중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연령이 청년층이다. 청년들의 부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학창시절 받은 학자금 대출이 있는데 양질의 일자리를 얻기 힘들니 대출금을 갚는 것을 어려워하고 있다. 당장 대출금을 갚아야 하니 아르바이트를 해서 갚는 청년들도 있다. 일자리를 찾는 것도 어렵는데 부채라는 짐까지 진 청년들에게는 결혼을 포기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 청년에서 출발한 부채는 한 가정의 탄생을 가로막는다. 부채는 개인의 삶, 청년들의 꿈, 가정의 평화, 국가의 미래를 빠르게 침몰시키고 있다.

## 부채문제에서 벗어나는 방법

부채문제를 극복할 방법이 전혀 없지는 않다. 교회와 개인이 할 수 있는 노력은 다음과 같다. 먼저 돈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신앙관을 정립해야 한다, 더불어 재정 관리에 대한 실질적인 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 구체적으로 자녀교육, 결혼, 내 집 마련, 노후 등 개인의 필요에 의한 구체적인 재정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영역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하고 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담겨야 한다.

이미 부채를 지고 있는 경우에는 분명한 해결이 필요하다. 부채에 대한 우선순위를 나누어 변제하고, 더 이상 부채가 발생하지 않게 신용카드사용과 소비습관을 관리해야 한다. 부채관리와 소비습관 조절이 어

려운 경우에는 재정전문가를 찾아가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조절이 어려운 심각한 부채를 지고 있는 경우 즉각적인 해결방법을 찾아야 한다. 개인회생, 파산신청 같은 제도를 피하지 않아야 한다. 채면을 살린다고 미루면 미룰수록 깊은 부채에 빠지게 된다. 보통 다음과 같은 순서를 통해 구제가 이루어진다.

재정전문가에 의한 상담 →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부채구제  
→ 법원을 통한 개인회생 → 법원을 통한 개인파산제도

### ‘부채탈출119’와 ‘긴급구조자금’

온누리교회는 일찍부터 부채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다양한 양육 프로그램 커리큘럼에 재정관리 강의를 추가하고, 성도들의 의식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사회선교부 사회책임팀에서는 청장년들의 실제적인 부채 해결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다. ‘부채탈출119’라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청장년들 각자의 처해있는 형편에 따라 단순한 재무상담, 신용회복위원회와 같은 구조 제도, 법적인 구제 방법인 개인회생, 파산제도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또한 ‘긴급구조자금’이라는 이름으로 돈이 없어 생활이 힘든 사람들에게 무상으로 금원을 대여해서 삶이 파괴되지 않도록 도와주고 있다. 지금까지 대여금원 전부가 회수되었다. 2015년도부터 부채탈출119를 통해 약 200명의 청장년들이 부채 문제에서 자유로워졌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실 것이다. 오히려 더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실 것이다.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돈의 주인이 누구인지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 재정에 대한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훈련을 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많은 부채로 힘들어 하는 이웃을 돌아보는 일까지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이웃들을 돌보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신명기에서는 “가난한 자들에 대한 사랑과 구제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넉넉한 마음으로 인색하지 말고 너희 손을 펴라” 당부했다. 부디 돈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이 전해지고, 개인과 사회가 변화되며, 더 나아가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들을 돕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한다. 

# 예수마을교회 ‘희년마을기금’

- 부채해방을 위한 실천사례 : 교회(2)

이 파 람 예수마을교회 목사

\* 월간 복음과상황 319호(2017년 6월호)에 실린 기사를 허락을 받고 씁니다.

서울 행운동에 위치한 예수마을교회는 지난해 12월부터 청년부를 대상으로 ‘희년마을기금’ 운영을 시작했다. 청년부원 중 어느 누구라도 급히 돈이 필요하면 1인당 한 달에 50만 원 한도(연 600만 원) 내에서 희년마을기금을 신청할 수 있고, 교회는 별도의 심사 없이 즉시 무상으로 지원한다.

서울대학교 인근에 위치하여 청년들을 중심으로 성장해온 예수마을교회는 설립한 지 올해로 18년이 됐다. 일반부 80-90명, 청년부 40명, 영유아·청소년 70명 정도의 교인이 출석한다. 일반부 성도 대부분이 청년 시절부터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온 것이 특징이다. 희년마을기금은 청년들의 필요와 전 교인의 물심양면 후원으로 시작되었으며,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정관을 만들었다. 정관상 정기 총회 및 가족 회의에서 매년 담당 교역자가 기금 운용 상황을 보고하며, 회계 및 감사에 관한 사항은 교회 정관을 따른다.

기금 출범 이후 지금까지 열 번의 신청과 지원이 있었다. 부임 초기부터 ‘예수, 희년, 하나님 나라’를 목회 중심에 둔 장승익(53) 담임목사는 희년마을기금에 대해 “우리 교회 특성을 살린 희년 실천의 일환”이라고 했다. 장 목사와 청년부 담당 교역자인 이파람(36) 전도사에게서 희년마을기금 이야기를 들었다.

— 교회 자체적으로 청년층에 특화된 ‘희년마을기금’을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장승익(장):** 작년 12월부터 시작되고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 그래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을 때 망설였는데, 부족하더라도 비슷한 고민을 하는 다른 교회들이 혹시 참고할 만한 내용일지도 몰라 응하기로 했

습니다. 이 기금의 수혜 대상은 등록 청년 교인입니다. 운영은 회년마을기금 정관에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이 정관은 청년들이 토론을 거듭하여 만들었습니다. 초안을 놓고 거듭 논의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서로 문제제기를 하고 또 토론하는 모습이 참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이파람(이):** 목사님 말씀처럼 회년마을기금 정관은 위에서 계획하고 하달된 것이 아니에요. 청년들이 비슷한 경험에서 겪는 불편함과 어색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스스로 정관을 만들고 토론을 거쳤습니다. 예를 들면, 보통 비슷한 기금들을 신청하면서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어렵고 가난한지를 평가받아야 하는 애로 사항이 있잖아요. 얼마나 괴로운 일이에요. 이런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 청년들이 함께 정관을 만들었지요. 청년들의 이러한 마음과 전 교인들의 회년에 대한 공감대를 통해 시작되었어요. 청년들에 의해 앞으로도 더 보완되고 확대될 수 있고요.

— “회년에 대한 공감대”라고 하셨는데요.

**장:** 이 기금의 목적이 ‘예수, 회년,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 교회 공동 비전이지요. 제 목회 철학이자 우리 교회 연구소 이름(예.회.하 연구소)이기도 해요. 막연히 회년이라고 하면 ‘난 토지가 없는데’ ‘난 돈도 없는데’ ‘내가 누구를 노예 삼았나?’라고 생각하게 되지요. 어려운 개념은 아니지만 오늘 이 땅에서 회년이란 도대체 무엇인지 처음엔 감이 잘 안 오는 게 사실이에요. 저도 목회 초기에는 10주 정도 시리즈로 예수, 회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교했지만 성도들에게 피부로 잘 가닿지 않더라고요. 지금은 몇 년 전부터 회년에 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매년 회년실천주일로 지키기도 하지만, 일상에서의 회년 이야기를 많이 해요. 감사하게도 많은 교우 분들께서 예수, 회년, 하나님 나라라는 목회 원리에 동의해 주시고요.

— 지금 우리에게 회년이란 무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장:** 결국은 사회적 약자에게 해방을 주는 것과 맥을 같이 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 한국 사회는 지금 빈부의 격차가 극심하지요. 회년을 실천하려면 이 시대에 교회가 청년, 여성, 장애인, 외국인 노동자, 탈북민,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들을 보듬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거듭 지적한 에피투미아(ἐπιθυμία), 우리 안에 잠재하는 욕망을 들여다보아야 하고요. 항상 돈에 관심이 많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싶어 하는 우리 안의 본능 말이지요. 회년을 실천하는 것을 고민하지만, 우리에게 언젠가 우리 욕망을 채우려 하는 본능이 공존하니까요. 이걸 저도 마찬가지고요.

— 욕망을 말씀하셨는데, 교우들 중에 청년에게 조건 없이 돈을 지원하는 데 반대하거나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는 분은 없나요?

**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저와 목사님, 청년부장님 이렇게 세 명이 기금운영위원인데 아직 그런 말씀하신 분은 없었어요. 기금 관리의 측면에서 고려할 수 있는 점이기도 하지만, 목사님이 말씀하신 희년 정신을 기본으로 하면, 우선 청년들을 믿음으로 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을 전제로 해야 하지요. 정관에 나와 있다시피, 희년마을기금 신청은 본인 스스로 이런 저런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 외에 얼마의 신청 액수만 위원에게 요청하면 되는 시스템이에요. 교회가 먼저 청년들을 신뢰하고, 그 바탕 위에서 청년들도 교회를 신뢰할 수 있어요. 목사님이 계속 강조해오신 성경의 희년 정신과 희년마을기금의 열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신뢰를 바탕으로 한 교회 공동체성의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회도 점점 더 개인적이 되어 가고, 교회는 더욱 신뢰를 잃어 가는 시대에 청년이 명백한 사회적 약자라고 보는데요. 교회가 먼저 그러한 청년들을 품고 신뢰한다면, 청년들이 다시 교회에 믿음을 갖게 되어 교회의 청년부 공동체성이 회복되어 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장:** 설령 도덕적 해이의 상황이 발생한다고 해도, 꾸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일단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속는 줄 알면서도 돈을 꺼준 적이 꽤 있어요. 대학생 때부터 돈 필요한 사람한테 일단 있는 만큼 주고 봤거든요. 더군다나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한 가족인데 더 말할 것도 없지요. 물질의 경우 이 방식이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 일반부와 청년부가 한 몸을 이루면서 같이 성장하는 데 하나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분위기가 한국교회 전체에 공유되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악의 힘이 꽤 큰 것 같습니다.

#### — 청년들의 사정을 이해해주는 기금 같네요.

**장:** 비슷한 장치를 두고 있는 몇 교회의 정관을 찾아보니 금액이 더 적고 어느 정도 조건들이 있었어요. 우리는 기금 사용을 청년으로 한정하는데, 사실 청년들은 언제라도 돈이 급히 필요할 수 있거든요. 저와 전도사님이 청년들의 개인적인 형편을 알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하면서 공부중인 학생도 있고, 때론 집의 월세 내기도 벅찬 경우도 있어요. 만약 당장 내일까지 돈이 급하게 필요한 청년이 있다면, 언제 서류를 작성해서 신청하고 심사를 기다리겠어요. 희년마을기금은 요청이 오면 두말없이 바로 지급합니다. 1인당 한 달에 50만 원, 1년에 최대 600만 원으로 제한을 두고 있고, 초과 금액의 경우는 청년부 전체회의를 거칩니다. 물론 기금 이용 후에 당사자 개인 상황이 나아지면 상환해서 다시 기금을 채울 수 있지만, 그걸 강요하거나 독촉하지 않습니다. 자물에 맡겨두는 거지요. 청년들의 팍팍한 현실 속에서 몇 푼 안 되는 돈 때문에 극단적 선택으로 몰리기도 하는데, 절박한 필요를 채워줄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저는 성경의 희년과 오늘날 우리 일상을 연결 지을 때 결국 돈과 건물로 좁혀진다고 봐요. 당장은 희년마을기금의 운영을 청년들로 한정하고 있지만 형편이 된다면 전교인으로 확대할 수도 있겠지요.

#### — 기금은 어떻게 조성되었나요?



**장:** 우리 교회가 청년 중심으로 세워진 특성을 갖고 있어요. 전임자인 이승장 목사님이 기독청년대학생 운동을 하시기도 했고, 청년 목회를 하셨던 분이거든요. 교회 어른들이 청년들에게 늘 관심이 많습니다. 작년 11월 마지막 주에 기금을 마련하려고 청년들이 주최를 해서 바자회를 가졌는데 생각한 것보다도 많은 돈이 모였어요. 교인들이 물건도 많이 사주시고, 기금 계좌로 후원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제 목회 지침 중 하나가 헌금을 강조하지 않는 것인데도, 성도들이 기금으로 헌금도 많이 하셨고요. 참으로 행복하고 감사한 일이었지요.

### —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성도들이 많은가요?

**장:** 우리 교회에는 부자도, 사업하는 분도 거의 없어요. 제가 이 교회 오고서 교인들 사정을 다 파악하지 못했을 때, ‘여러분 가운데 집을 두 채 갖고 있는 분은 한 채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시라고 설교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설교 후에 몇 분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우리 교회에 그런 부자 없습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웃음) 사실 돈의 여부보다는 무언가를 시작할 때 그 시기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시행착오를 줄이고, 불필요한 혼란을 막을 수 있으니까요. 우리 교회는 작년 말, 회년마을기금을 시작했던 그때가 이런 일이 시작되기에 무르익었던 시점 같습니다. 회년을 중점으로 두고 목회해왔고, 예.회.하. 연구소 세미나에도 교회 어른들이 늘 관심을 가져주셨거든요.

**이:** 회년마을기금은 청년들 안에서 먼저 발생한 이슈기도 해요. 교회가 외부 선교와 구제는 익숙하게 많이 하는데, 그러는 사이 정작 어려움을 겪는 공동체 구성원에 대해서는 구제의 손길을 뺏기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었어요. 서로 대략 형편은 알고 있는데 직접 도와주려고 하다가 오히려 실수하거나 오해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회년마을기금은 사랑의 통로가 되었어요. 기금 마련을 위해 바자회를 하고 정관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청년부 모두가 서로에게 마음이 있다는 걸 확인한 것이 좋은 자극이었어요.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시작하고, 어른들에게는 청년들을 공식적으로 도울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서로 기쁨으로 함께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것이 우리 공동체에서 사랑을 선순환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지요.

### — 교회가 일심동체네요.

**장:** 이런 말하긴 좀 그렇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 괜찮은 분들이예요. 청년부도 일반부도 참 건강한 분들이지요. 목사가 집도 팔라고 말하고, 예언서 말씀을 그대로 다 설교해도 성숙하게 소화하시는 것 같아요. 다른 교회의 동료 목사들 중에는 예언서 설교를 하면 성도들로부터 ‘그런 설교 하지 말라거나 ‘중복좌파 아니냐’라는 말을 듣는다더군요. 교회에서 그런 말이 나오면 예언서 설교하기가 쉽지 않지요. 예수님의 삶을 보면 그렇게 급진적인 분이 또 없는데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복음의 핵심을 금기시하는

분위기가 되는 것은 정말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제가 예언서 설교를 하고, 다소 비판적인 설교를 하면 때론 개인적으로 불편하게 느끼는 성도도 있겠지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스스로 성숙하게 소화할 수 있고, 기본적으로 사회적 약자에 관심이 많아요. 한 가지 아쉬운 건, 희년마을기금 신청에 대해 우리 청년들이 스스로 너무 숙고하는 건 아닌가 싶은 부분이에요. ‘나 같은 사람이 기금을 신청해도 될까’ 하고요.


**이:** 청년들이 기도하고 고민하며 시작된 기금이기에 청년부에서 누구든 도움이 필요할 때에는 편하게 신청하고 쓸 수 있는 분위기가 더 넓게 형성되면 좋겠어요. 그렇게 우리 청년부 공동체를 모두가 더 생각하고 사랑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물론 제가 당사자라고 해도 기금을 사용할 생각을 하면 미안한 마음, 조심스러운 마음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럼에도 필요한 청년들에게 사용될 목적으로 마련된 기금이니 편히 사용하고 희년의 정신을 품으며 감사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시간이 꽤 걸리겠지요. 그렇게 자신이 속한 신앙 공동체에서 희년의 좋은 경험을 간직한다면, 그것이 씨앗이 되어 이후 어디서 어떤 영역에서 생활하고 일하든지 희년의 열매가 맺힐 것이고 그게 하나님 나라를 드러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 — 희년마을기금이 청년들이 공동체성을 경험하는 장치가 될 수도 있을까요?

**장:** 그럼요. 할 수 있다면 공동생활 건물도 제공하고 싶습니다. 교회들이 하면 좋을 텐데요. 교회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이웃들이 무료로 혹은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말이지요. 그렇다면 학생들의 경우에 한창 때 자기 비전을 갖고 교회 안에서 그들이 건강한 사회인이자 신앙인으로 성숙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청년들이 사회적인 정의를 세우는 일에는 다들 모이기를 잘하거든요. 동시에 희년마을기금을 통해 교회 안의 다른 지체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무얼 하고 있는지 관심을 기울이는 기회가 될 수 있겠죠. 서로에 대한 친밀성을 풍성하게 할 수 있는 도구라고나 할까요? 시대와 현실의 한계도 있겠지만, 청년들이 다양하게 꼭 공동체성을 경험하면 좋겠어요. 얼마 되진 않았지만 희년마을기금을 운영하며 겪는 교회 전체 분위기는 참 고무적이네요.

#### — 청년들에게 한 말씀해주신다면요?

우선, 저 자신도 우리 시대 청년들의 한계, 시대의 한계를 보면서 어떻게 목회를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도 예수를 바라보라고 강조하고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고 깊이 바라보고 묵상하세요. 어떤 사람 혹은 목회자가 아니라 예수를 직접 바라보는 것이지요. 저는 예수의 삶을 묵상하면서 희년을 발견하고 장애인 사역을 결심하고 사회적 약자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청년들도 예수를 통해 자기만의 비전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 청년들이 모인 공동체 안에서 주위

에서 어려운 이웃들을 더욱 바라보게 될 것이고, 우리 교회를 떠나더라도 어떤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삶을 걸을 수 있을 거예요. 헤매더라도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을 겁니다. 

# 희년은행의 도전과 과제

- 부채해방을 위한 실천사례 : 시민사회

김 덕 영 희년함께 사무처장

## 1. 희년은행 소개

오늘 한국사회의 많은 청년들이 고금리 빚으로 고통 받고 있으며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빈곤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희년함께'는 성경의 희년정신에서 벗어난 오늘 한국사회의 뿌리 깊은 병폐를 해결하고자 자조금융 대안금융활동인 희년은행을 설립 및 운영하여 무이자 저축운동을 시작으로 다양한 풀뿌리 실천운동을 전개하고자 한다. 희년은행은 조합방식으로 조합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활동을 지지하고 돕는다.

### 1. 희년은행이 출범하기까지



희년은행을 시작한 '희년함께'는 1984년에 성경의 희년정신을 오늘 날 자본주의 사회에서 실천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성경의 희년에는 부채탕감, 노예해방, 토지반환의 조치가 이루어져 빈곤의 대물림이 근본적으로 차단된 모두가 땀 흘린 만큼의 정당한 대가를 누리는 사회를 지향했다. 특별히 '희년함께'는 토지의 공적가치를 사회가 함께 누리는 것을 희년정신

의 핵심으로 보았다. 땀 흘리지 않고 얻은 소득인 불로소득(부동산 투기소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모두가 안정적인 주거권을 누리게 하는 것이 희년의 정신이라고 본 것이다.

설립된 이후 30년 동안 ‘희년함께’는 부동산 투기가 한국경제 불평등의 핵심 원인 이라고 보고 토지불로 소득 환수를 위한 정책운동에 매진했다. ‘희년함께’는 희년정신의 확산을 위해서 정책운동과 함께 다양한 참여와 실천운동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2014년부터 부채탕감운동을 전개하였다. 토지문제는 다양한 금융문제와 결합하여 부의 불평등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이다. 부채탕감운동의 전개는 자연스럽게 부채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청년부채문제에 집중하게 되었고 이후 2015년 4월 6일 ‘청춘희년운동본부’의 발족으로 이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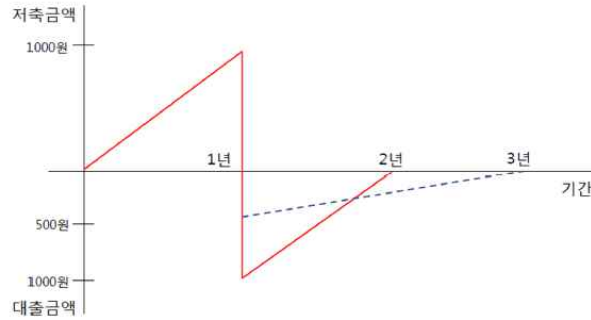
‘희년함께’는 ‘청춘희년운동본부’ 활동에 참여하면서 다양한 부채청년을 만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부채 문제가 청년들의 주거문제, 심리문제, 사회문제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부채문제를 해결할 뿐 아니라 어떻게 작은 힘을 모아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창조적 힘을 발휘할 수 있을지 고민하다가 해외의 대안은행 사례를 주목하였다. 특별히 스웨덴 JAK은행의 사례를 통해 무이자저축을 통한 자본의 형성과 대안적 자본흐름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이후 2016년 4월 29일 희년은행이 출범하게 되었다.

## 2. 희년은행의 핵심구조: 무이자출자에 기초한 무이자 대출권

희년은행은 오늘날 금융자본주의의 가장 큰 문제점이 과도한 수익률에 치우쳐 금융의 공적인 기능이 퇴색된 점이라고 보았다. 과도한 수익률은 복리이자시스템에 기초해 있는데 희년은행은 이에 반하여 ‘무이자 은행’을 지향한다. 조합원들은 자신이 무이자 출자한 만큼 무이자 대출권을 부여받아 안정적 저축습관과 재무관리를 병행할 수 있다. 또한 무이자 출자금이 모이면 자본의 누적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대안적 가치를 지향하는 자본의 선순환 흐름을 만들어 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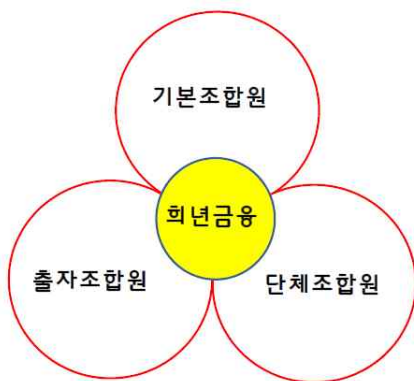
## 1) 무이자출자 & 무이자대출

### 희년은행 기본조합원



희년은행의 기본조합원은 '무이자 저축'한 시간과 금액의 크기에 비례해 거치기간 이후에 '무이자 대출권'이 생성된다. 안정적 소득과 자산이 부재한 대부분의 청년들은 생활 필수재 구매를 위해 목돈이 필요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고금리 대출유혹에 노출되어 있다. 이런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재무습관을 개선하고 저축을 통한 무이자 대출권을 확보하게 되면 청년의 삶이 재생되는 것과 함께 서로를 살릴 수 있는 대안적 자본의 흐름을 만들어 낼 수 있다. '무이자 대출권'은 '저축포인트 시스템'을 통하여 정확하게 대출 가능기간과 금액을 계산한다.

## 2) 조합원 구조



**\*기본조합원:** 기본조합원은 매월 조합비(운영비) 5천 원 이상을 의무적으로 납부하며 출자금(저축)도 5천 원 이상을 납부한다. 출자한 만큼의 '무이자 대출권'을 갖는다.

**\*출자조합원:** 출자조합원은 조합비(운영비) 납부 의무는 없고, 매월 5만 원 이상의 출자(저축)를 의무적으로 납부하거나 50만 원 이상의 출자(저축)를 일시적으로 납부할 수 있다.

**\*단체조합원:** 단체조합원은 매월 조합비(운영비) 5만 원 이상을 의무적으로 납부하며 희년은행과 다양한 공동사업(생활경제교육공유, 청년 주거 및 고금리 지원 대출)을 진행한다.

### 3. 희년은행 핵심사업

희년은행은 모여진 무이자 출자 자본을 가장 우선적으로 청년문제를 해결하는데 투자하고자 한다. 청년의, 청년에 의한, 청년을 위한 희년은행 핵심 사업을 통해 청년의 부채문제와 주거문제, 일자리 문제의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 1) 빛내는 청춘에게 빛나는 희년을!

: 고금리부채 청년 무이자전환 대출 사업

희년은행은 고금리 부채로 고통 받는 청년들에게 재무상담 및 교육과 무이자 전환대출을 지원한다.

#### 2) 지·옥·고 탈출 프로젝트!

: 청년 공동주거지원 대출 사업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에서 홀로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과 사회적 관계망을 제공하고 주거비까지 절감할 수 있는 청년 공동주거지원 대출을 진행한다.

#### 3) 한 데나리온 프로젝트!

: 청년일자리 창출 및 연결 사업

청년조합원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투자지원재단과 함께 대안창업 모델을 개발하고 중소기업 대표 및 자영업자로 구성된 희년실업인네트워크(가)를 통해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연결을 제공한다.

#### 4. 희년은행의 책임성과 안정성: 조합원 출자금 안전하게 관리하기!

희년은행은 금융인 및 법조인이 함께 참여하는 책임 있는 관리 감사, 대출심사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다.

##### <감사 시스템>

세무사와 변호사로 구성된 외부 감사위원회는 희년은행의 전반적인 운영을 감사하여 희년은행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보장한다.

##### <관계기반 대출심사 시스템>

희년은행은 상담과 교육을 통해 관계 형성 후 고금리청년들에게 대출을 실시한다. 대출자의 자격과 대출금액의 적정 관리를 위해 금융인으로 구성된 대출심사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대출여부를 결정한다.

##### <대손준비금>

2016년 1,000만 원 + 대출금 0.5% 누적

희년은행은 대손준비금을 별도로 운영하여 조합원의 출자금을 책임 있게 보호한다. 대손준비금은 매 대출시 대출금의 0.5%를 대손준비금 항목으로 누적시켜 손실에 대비한다.

##### \* 대손준비금

대출금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항시 확보하는 자금, 출자자들의 출자금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 <희년은행 자문위원>

희년은행이 빠른 시일에 정착할 수 있었던 것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하였기 때문이다. 전문가 자문위원들은 희년은행의 대출심사, 비전 및 방향성 제시, 감사구조, 법적 틀 준비 등의 구체적인 분야에서 지속적인 피드백과 조언을 아끼지 않고 있다.

고성훈(한화 S&C 전략기획팀장)

남기업(토지+자유 연구소 소장)

안정권(슬로워크 최고지속가능성책임자)

박민정(법무법인 소명 변호사)

송혁진(디앤디 세무회계 세무사)

이재호(한국투자신탁운용)

이지훈(CVA 컨설팅 팀장)

이윤상(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유병연(법무법인 이루 변호사)

전소영(변호사)

전은호(협치서울추진단 기획코디네이터)

조성찬(토지+자유 연구소 통일북한센터장)

조영민(씨티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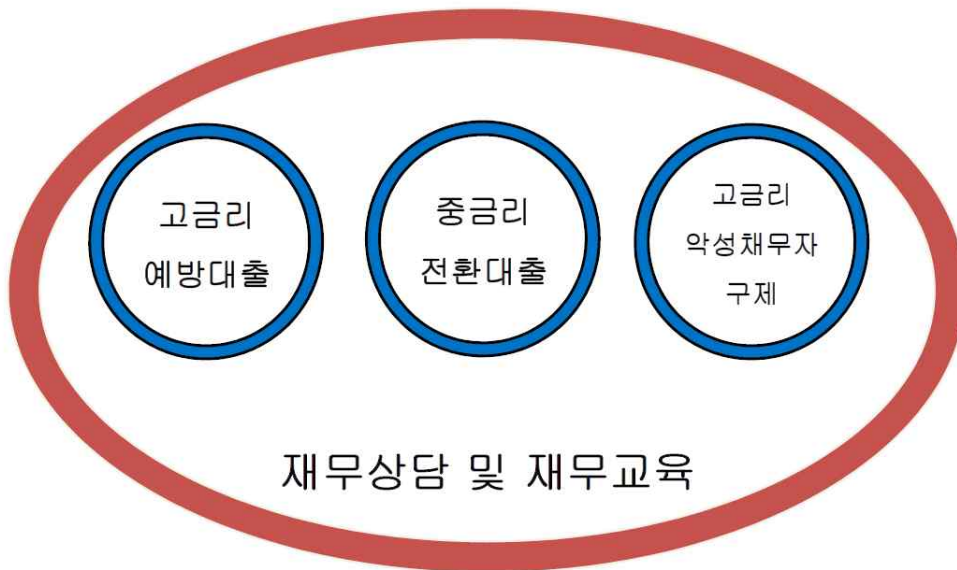
## 5. 희년은행 주요현황

희년은행은 2016년 4월 29일에 출범하여 2017년 10월 30일 현재 조합원 305, 출자금 194,763,324 원이 모였다.

## 6. 희년은행 주요 혁신노력

### 1) 고금리전환대출지원 프로세스 검증

## 고금리 - 무이자 전환대출



희년은행의 고금리전환대출지원은 모두 재무상담과 재무교육에 기반하여 이루어진다. 희년은행의 대출지원을 신청한 청년은 모두 기존 조합원 및 단체 조합원 관계망에 연결된다. 또한 지원 대출을 받는 청년은 재무상담 및 재무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고금리 청년들이 지원 대출(최대 300만 원)을 마중물 삼아 안정적으로 삶이 회복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고금리 과다 채무자(금리 25%이상, 부채 500만 원 이상)의 경우 (사)희망만드는사람들과 협력하여 채무조정, 재무관리를 병행한다. 500만 원 이상의 고금리 과다채무자이거나 현금흐름이 불안정할 경우에는 (사)희망만드는사람들의 전문가 채무조정상담을 우선적으로 받게 한다. 이후 사후 재무보고서를 통해 지원 대출 여부를 결정한다. 기존 채무자에게는 보다 실질적인 채무조정과 무이자대출을 통해 재무관리 및 부채의 늪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희년은행은 차원에서는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프로세스다.

## 〈고금리 과다채무자 전문가 상담 매뉴얼〉

고금리 과다채무자의 경우 전문가 상담을 통해 채무조정 진행 및 재무습관 개선을 통해 전환대출 진행여부를 판단한다.

### 1. 전문가 상담 진행

- ① (사) 희망만드는사람들 협력사업
- ② 채무조정 전문가 상담비 1인당 20만 원 희년은행 선지불
- ③ 재무 및 신용상태 보고서 확인
- ④ 대출심사위원회 공유
- ⑤ 전문가 상담비 추후 내담자 상황

### 2. 전문가 상담 진행 조건

- ① 25% 이상 고금리, 500만 원 이상인 경우
- ② 25% 이상 고금리, 500만 원 이하인 경우, 현금흐름이 불안정할 경우
- ③ 희년은행 기본조합원 가입의무
- ④ 자활의지 및 교육 참여 의사 확인
- ⑤ 희년은행 조합원 교육 및 세미나 3회 이상 참여확인(재무습관개선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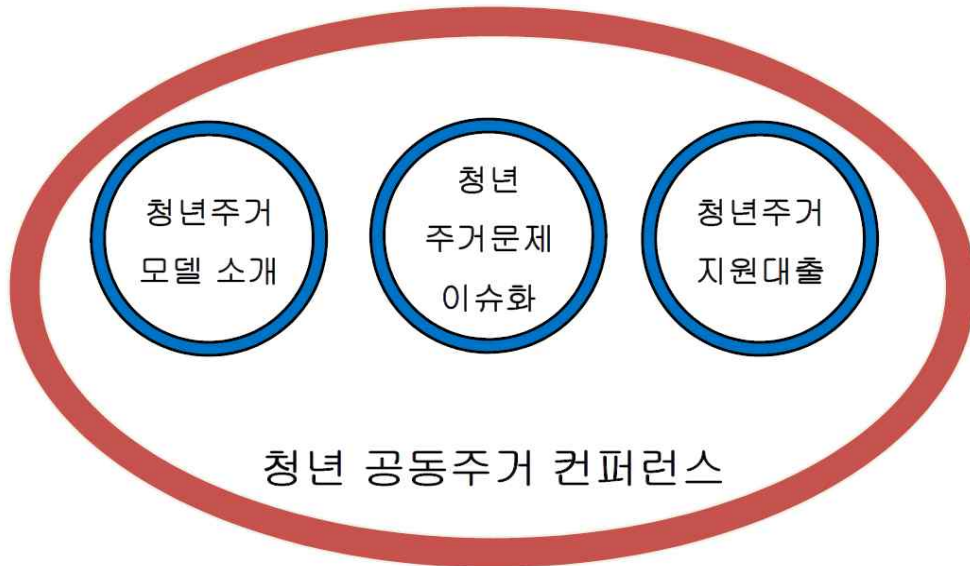
### 3. 기타조건

- ① 희년은행 기본조합원 가입
- ② 상담비 20만 원 추후 내담자 상황

희년은행은 위와 같은 매뉴얼에 따라 (사)희망만드는사람들과 고금리 과다채무자 상담 진행을 4건 진행했으며 이중 1명은 채무조정 및 재무습관 개선이후 295만 원의 나머지 고금리를 무이자 전환대출 지원하였다.

## 2) 청년공동주거대출지원 프로세스 구축

### 청년공동주거 지원대출



희년은행은 고금리 전환대출 지원과 함께 청년 공동주거 대출 지원을 핵심적인 사업으로 시작했다. 현재 희년은행은 청년주거공동체인 '숨과심 공동체'에 주거 보증금 1,000만 원 지원 대출을 실시하였다. 희년은행은 청년들의 주거문제를 이슈화하는 한편, 다양한 청년주거의 모델을 소개하고자 한다. 2017년에는 청년주거관련 단체들과 협력하여 '청년 공동주거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청년주거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 <청년주거빈곤의 대안 모색 - 마을공동체와 공유주택 기획탐방 (4주)>

: 희년은행 & 기독교청년아카데미 공동기획

(청년주거 대안모델 탐방, 향후 기획기사)

- ① '공유지의 확산을 꿈꾸는' - 해방촌 빈집
- ② '일상의 삶과 제도 개선, 두 마리 토끼 잡는' - 민달팽이 주택협동조합 & 유니온
- ③ '안심되는 실험 공동체 룰루랄라' - 우리동네사람들
- ④ 농도상생 + 임신출산육아/교육 - 생명평화연대

\* 일시 : 2017년 1월 4일 ~ 1월 25일(수) 개강, 매주 수요일 저녁 7시30분

### 3) 스웨덴 JAK은행 멘토-멘티 테이블 미팅 및 향후 협력관계 구축

희년은행의 무이자대출 및 유동성 관리는 스웨덴의 무이자 은행 JAK모델을 많이 참조하였다. 마침 2016년 경기도 따복공동체에서 사회적 금융 국제세미나를 개최하면서 JAK의 실무책임자인 앤-마리 스벤슨의 방한이 있었다. 희년은행의 실무자들은 앤-마리 스벤슨과 멘토-멘티 테이블 미팅을 통해 희년은행 운영의 피드백을 받았고 향후 JAK와 희년은행 간의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약속하였다.



### 4) 부동산&보험 청년생활경제매뉴얼 제작진행 (아름다운 재단 500만 원 지원사업)

희년은행이 자조금융을 운영하는 가장 큰 목적은 청년의 삶이 회복되는 것이고 회복된 청년이 새로운 사회혁신의 주역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대출 지원뿐 아니라 청년의 삶을 돕기 위한 생활밀착형 경제교육이 절실하다. 2016년 희년은행은 우선 청년의 주거문제와 보험관련 생활경제매뉴얼 제작 사업을 진행하였다. 생활경제 콘텐츠를 통해 희년은행은 실질적인 경제생활에 도움이 되는 교육운동을 펼쳐나가고자 한다.

<청년들의 좋은 삶을 위한 주택정책%보험 활용하기 강좌>

# 청년들의 좋은 삶을 위한 주택정책 & 보험 활용하기

1부- 목돈 없이 주거 안정 모색!

: 공공임대주택 및 공유주택 활용 방안

2부- 위험사회에서 안전방안 모색!

: 내게 맞는 보험, 주도적으로 사용하기

\* 가입한 보험증서를 가져오시면 자신에게 적합한 보험인지 확인해드립니다 \*

일시 : 12월 15일 (목) 저녁 7시

일정 ① 7:00-7:50 부동산

이성영 (토지+자유연구소 연구원)

② 8:00-9:50 보험

구본기 (구본기 생활경제연구소장)

『당신이 믿고 가입한 보험을 의심하라』,

『월급을 경영하라』 저자

장소 : 희년함께 (신촌로1길 59 영산빌라 101호)

참가비 : 1만원(희년함께/희년은행 조합원 무료)

신청 : 구글양식 접수 → 참가비 입금

국민 822402-04-228187 이신근(희년학교)

문의 : 02-736-4907, hgakor@daum.net

## 7. 희년은행의 비전: 사회적 금융을 통한 희년생태계 조성



희년은행은 자본이 일정 정도 쌓이면 고금리 전환대출뿐만 아니라 친환경 재생에너지 사업, 토지가치공유의 다양한 실험인 사회주택, 공동체토지신탁, 토지협동조합 등 다양한 영역에 자본을 빌려주어 대안적 가치가 실현되고 다시 자본이 선순환 되는 ‘희년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한다.

## II. 희년은행의 지속가능성 모색

### 1. 조합원(구성원) 참여 구조 및 운영원리

#### 1) 의사결정구조

현 협동조합 기본법에는 보험, 금융 항목이 허가되어 있지 않지만 희년은행은 협동조합 방식의 운영을 지향한다. 조합원들은 희년은행의 모든 의사결정과정에서 1인 1표의 권리를 갖는다. 매년 총회에서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요 의사결정을 하고 2년 임기제의 운영위원을 선정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매월 1회의 모임을 통해 희년은행 실무자의 보고를 확인하여 구체적인 의사결정을 진행한다.

## 2) 운영원리

희년은행은 기본조합원, 출자조합원, 단체조합원을 기본 구성원으로 한다. 기본조합원은 매달 5,000 ~ 30,000원을 본인이 선택해 조합비로 납부할 의무를 지닌다. 대신 자신이 출자(저축)한 만큼의 '무이자 대출권'을 얻게 된다. 출자조합원은 조합비 납부의무가 없는 대신 무이자대출권은 없다. 단체조합원의 경우 월 조합비가 최소 50,000원 이상이다. 희년은행은 기본조합원과 단체조합원의 조합비를 기본으로 운영비가 충당되는 구조이다. 출자조합원은 무이자저축을 통해 희년은행의 유동성 지원을 한다.

## 3) 조합원교육 - 생활밀착형 경제교육프로그램

희년은행은 매달 조합원 교육모임 '살림의 정석'을 열고 있다. '살림의 정석'은 희년은행의 지향점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모임이다. 희년은행의 운영원리, 조합원의 권리, 생활밀착형 경제교육이 소개되고 서로 교제하는 시간이다.

희년은행의 고금리전환대출을 받은 조합원은 의무적으로 재무상담, 재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를 통해 단순한 금융지원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삶의 전환을 이끌고자 한다. 교육은 조합원이 희년은행의 사회적 관계망에 자연스럽게 편입될 수 있도록 돕는다.

2016년 희년은행은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을 받아 부동산&보험 청년생활경제매뉴얼 제작을 진행했다. 청년을 위한 구체적인 부동산 정책지원안내 및 보험안내 매뉴얼이다.

희년은행은 지속적으로 생활밀착형 경제교육 콘텐츠를 만들어 조합원 교육과 실천운동을 병행하고자 한다. 사회적 금융에 기초한 대안금융소비자운동으로 발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4) 조합원 참여모델

희년은행의 주요 구성원은 기본조합원이다. 기본조합원은 거치기간(최소 1년)이 지나면 자신이 출자(저축)한 만큼 무이자대출권이 생긴다. 무이자대출권은 자신이 저축한 금액을 인출할 수 있는 권한과 함께 추가적인 대출권을 말한다. 조합원들은 무이자대출권을 통해 긴급생활자금의 유동성을 확보하게 된다.

무이자대출권은 출자포인트 관리를 통해 정확하게 자신이 출자한 금액, 기간에 비례하여 제공된다. 희년은행은 2018년 2월까지 무이자대출권 양도 시스템을 구축하여 무이자대출권을 본인이 이용하거나 타인 또는 대안사업에 양도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자 한다. 조합원들은 자신이 출자한 만큼의 권한을 가지고 다양한 대안대출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출자조합원은 무이자저축 참여를 통해 희년은행의 유동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출자조합원의 무이자저축은 기본 1금융권 예금이자가 매우 저조한 상황이기 때문에 참여의 확대가 더욱 용이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희년은행의 비전과 사업이 명확해질수록 앞으로 참여의 폭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단체조합원은 월 조합비 5만 원 이상의 납부의무를 지닌다. 현재 희년은행의 단체조합원에 등록된 조합원은 4개 단체로 3개의 교회와 1개의 중소기업이다. 단체조합원은 희년은행의 모든 운영원리와 핵심컨텐츠를 공유한다. 희년은행은 고금리청년 및 청년주거공동체를 단체조합원과 연결해 매칭펀드지원 및 협력관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또한 단체조합원은 희년은행의 지점화로 연결되어 희년은행의 확산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단체조합원의 구성원들에게 제공되는 희년은행의 생활밀착형 경제교육은 지속적인 참여와 실천운동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 5) 희년은행 협력모델

## 희년은행 협력모델 “수평적 네트워크”



희년은행은 사회적 금융을 통해 개인의 문제, 사회구조의 문제, 문화의 문제를 유기적으로 해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해당 사항별 관련 다양한 연대조직과의 협력모델을 만들어 풀어가는 모델을 지향한다. 희년은행은 각 연대단체들과 최대 협력의 폭을 넓히고 사회적 금융을 통한 협력의 끈을 만들어 가는 조정자로서 역할에 집중한다.



## 2. 희년은행 리스크 관리 구조

### 1) 관계금융 지향

희년은행은 관계를 바탕으로 한 금융을 추구한다. 관계금융은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금융이다. 기존의 금융이 확률에 근거하여 수입을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면 희년은행은 면대면 관계를 통한 신뢰에 기반 한다. 무이자전환대출의 기회는 희년은행이 제공하는 재무교육 및 상담을 통해 충분한 관계가 맺어진 청년들로 한정된다. 대출을 받는 청년들은 기본조합원 가입을 의무화해 단순 자금지원뿐 아니라 조합의 다양한 사회적 관계망 안으로 들어 올 수 있도록 한다.

조합원들 간의 정보를 온라인, 오프라인 공간에서 공유하며 자연스러운 사회적 관계망이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향후 2년 안에 지역거점을 형성하여 희년은행의 자생적 조직화가 더욱 활성화 되도록 한다.

관계금융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대출조합원의 삶의 회복을 목표로 금융활동을 한다. 따라서 핵심적으로 대출조합원의 재무교육, 재무습관관리, 사회적 관계망 제공을 필수적으로 한다. 조합원들 간의 수평적 교제의 장을 열어 고립되지 않고 서로의 문제를 함께 공유하여 해결하도록 한다. 조합원들 간의 관계가 깊어지고 다양해질수록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희년은행의 역량은 커진다.

관계금융을 통한 조합원 조직화의 첫 번째 목표는 먼저 금융소비자로서의 권리를 인식하는 것이다. 권리를 자각한 조합원들은 금융소비자로서의 연대를 통한 자조금융활동 및 대안적 금융정책 활동을 모색한다. 모든 조합원이 금융의 주체로 세워져 대안적 자본의 흐름을 형성하는 활동을 펼쳐나가는 것이 관계금융의 최종 목적이다.

### 2) 무이자 대출권

희년은행의 기본조합원은 자신이 저축한 만큼의 무이자대출권을 받게 된다. 기본조합원의 무이자저축은 본인의 신용뿐 아니라 희년은행의 유동성을 누적시키는 기능을 한다. 추가적으로 확보되는 무이자대출권은 그동안 기본조합원이 누적된 신용만큼의 혜택이기 때문에 무이자대출의 리스크를 최소화시킨다.

### 3) 출자포인트 시스템 구축

희년은행의 무이자대출권은 출자포인트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관리한다. 현재까지 조합원들의 누적 저축액은 매달 초 문자발송을 통해 조합원들에게 공지하였다. 또한 기본조합원의 출자금액과 기간에 비례한 무이자대출권은 출자포인트 시스템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희년은행은 2017년 2월까지

온라인 홈페이지를 개설해 조합원에게 ID를 발급하여 본인의 저축액과 무이자대출권을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한다.

#### 4) 의무저축제도

희년은행 유동성 관리의 핵심은 의무저축제도에 기반한다. 희년은행은 무이자대출을 제공하는 반면 대출상환액과 동일한 의무저축을 의무적으로 하게 한다. 예를 들면 100만원을 20개월 간 무이자 대출하게 했을 경우 매월 5만 원은 상환, 매월 5만 원은 의무저축을 하게 된다. 대출지원 조합원은 매월 10만 원의 부담으로 20개월 만에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고 상환이 끝나면 희년은행 본인 계좌에 100만 원의 저축액이 쌓여있게 된다. 이를 통해 조합원 본인의 재정관리를 건강하게 유도하며 희년은행의 유동성 확보 및 리스크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된다.

#### 5) 대출심사위원회

희년은행의 대출은 대출심사위원회에서 최종심사 및 결정된다. 대출심사위원은 희년은행 조합원 가운데 금융인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출신청 조합원의 1차 재무상당자료를 정리한 보고서, 각종 부채 및 재정관리 근거자료를 통해 객관적인 심사과정을 거친다. 대출신청 조합원의 1차 재무상당 이후 3일 안에 심사를 마친다. 대출심사위원회는 실무자의 주관적인 판단을 우려해 최대한 객관적인 안정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6) 대손준비금제도

희년은행은 일반은행처럼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최대한 자체 시스템 안에서 리스크를 관리하여야 한다. 희년은행은 대손준비금제도를 두어 조합원의 출자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한다. 매 대출시 대출금의 0.5%를 대손준비금으로 누적시키고 있으며 초기 후원을 통해 현재는 대손준비금 통장에 1,000만 원이 누적되어있다. 대손준비금은 평소에 지속적으로 대손준비금을 누적시키고 대출금이 부실처리 되었을 때 충당하는 기능을 한다.

#### 7) 상환조건 및 유예제도

희년은행은 대출지원 조합원이 마주하는 다양한 리스크에 대비하여 상환기간을 유예하거나 조정하는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를 두고 있다.

### 〈상환유예조건 및 프로세스〉

전체 대출자의 상환은 단체조합원 상환을 제외하고 상환유예기간을 총3개월로 한다. 대출자는 갑작스런 재난 또는 사고로 상환 및 의무저축이 어려울 경우 미리 희년은행에 연락, 상환유예 신청을 할 수 있고 유예기간은 최대 3개월로 한다.

#### 상환유예조건

- ① 이직 및 소득의 중대한 변동 발생
- ② 가족 및 본인의 심각한 건강문제 발생
- ③ 기타 문제로 ①,②항에 준하는 중대한 변동 발생
- ④ 희년은행에 예정 상환일 전에 미리 통지

#### 상환유예절차

- ① 상환유예 신청
- ② 신청 후 1주일 안에 재무상담실시
- ③ 재무상담결과 대출심사위원회 보고 및 승인
- ④ 2차 실무자 대면미팅진행

#### 상환금액조정

- ① 상환유예기간 이후 지속적 어려움으로 원 상환액부담이 어려울시
- ② 대출 최대기간인 36개월 안에서 월 상환액을 조정

#### 손실처리프로세스

- ① 상환기간 연장후 의무저축 2개월 이상 중단시
- ② 기존 의무저축으로 손실충당
- ③ 남은 손실액은 대손충당금으로 손실충당
- ④ 전체 부실채권비율은 1%로 관리

### 8) 유동성 관리 포트폴리오

희년은행은 유동성관리를 위해 각종 대출지원의 성격에 따라 총 출자금의 포트폴리오를 다음과 같이 유지 및 관리하고 있다.

#### <유동성 관리 포트폴리오>

- ① 고금리전환대출: 총 출자금의 최대 10%
- ② 공동주거지원대출: 총 출자금의 최대 40%
- ③ 기본조합원대출: 총 출자금의 최대 30%
- ④ 단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조정가능

### III. 시민경제의 한 퍼즐로서의 희년은행이 나아갈 방향

## 희년은행의 단계적 임팩트 지점 예시



#### 1. 규모화 전략


희년은행은 관계금융의 지속적 확장을 통해 개인의 문제뿐 아니라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한 사회적 금융의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규모화의 여부는 매우 중요하다. 희년은행 조직의 안정적인 성장과 관계금융으로서의 정체성을 놓치지 않아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를 위한 각 사업별 임팩트지점을 구상하고 사업별 특색에 맞는 적정규모의 자본형성 목표와 연대단체를 정하여 단계적으로 규모화 되는 전략이다. 규모화의 단계별 목표마다 조직의 관계와 협력모델이 안착되는 것이 관건이다.

## 2. 지역자산화 전략

희년은행의 대안적 자본흐름이 한 지역의 선순환 경제모델의 구축으로 이어져 지역거점이 형성되는 것은 희년은행의 중요한 목표이다. 향후 2년 안에 지역거점을 형성하고자 한다.

희년은행은 1차적으로 자조금융 플랫폼을 통한 민간 시민의 자산을 규모화 하고 거점 지역을 선정한다. 거점 지역의 지방정부 및 타 민간 재단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매칭 펀드 및 토지임대 등의 지원을 통해 지역자산화 거점을 형성한다.

지역자산화에서 희년은행의 역할은 시민자산의 자생적 규모화를 이루어 내고 지방정부 및 민간재단에 구체적 협력사업 제안을 하는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이다. 

# 기윤실 부채해방운동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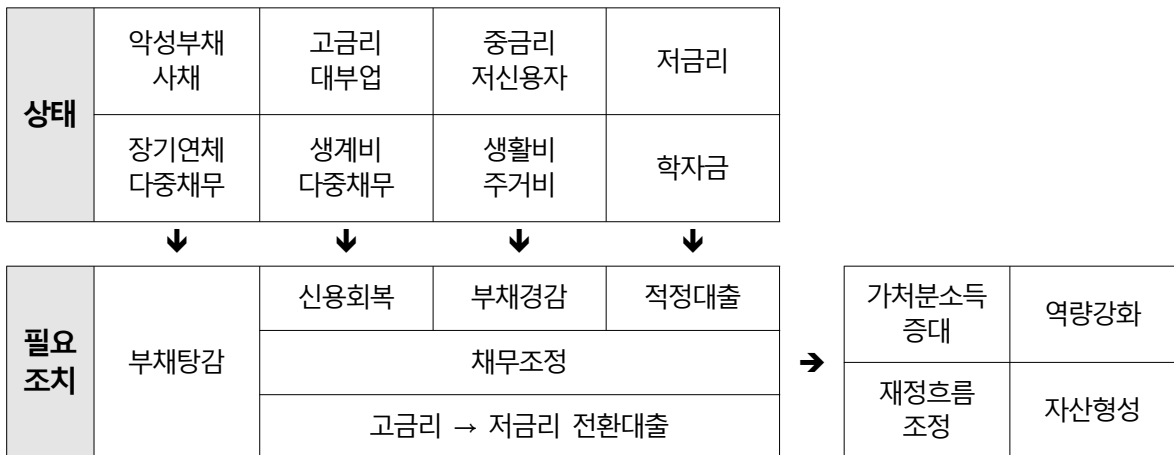
이 상 민 기윤실 좋은사회운동본부 본부장, 법무법인 에셀 변호사

## 1. 그리스도인들이 왜 부채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가?

- 가계부채는 그 규모가 약 1400조 원에 이를 정도로(2017년 2분기 1388조) 한국사회의 심각하고 절박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 상당수가 다중채무로 이어지는데 이는 사치·과소비 때문이 아니라, 생계의 문제 및 구조적 악순환에 따른 것으로 개인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사회적 공동해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성경에서 말하는 희년(빚탕감)의 관점으로 볼 때, 그리스도인들의 적극적인 대처와 도움이 필요합니다.
- 기윤실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대상으로 가계부채 문제의 심각성과 공적 해결의 필요성을 알리고, 부채문제로 고통 받는 이웃을 도울 수 있는 실천 대안을 개발하여 보급하고자 합니다.

## 2. 부채문제의 해결방안

### (1) 부채문제 해결을 위한 과정



## (2) 해결방안별 분류표

	채무조정 워크아웃, 회생, 파산	대출지원 고금리 → 저금리 전환대출	자산형성
<b>공공</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li> <li>서울회생법원</li> <li>국민행복기금</li> <li>한국장학재단</li> <li>신용회복위원회</li> <li>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li> <li>서울복지재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용회복위원회</li> <li>서민금융진흥원</li> <li>근로복지공단</li> <li>서울시 한강론, 신용상담론</li> <li>지자체 학자금 이차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년내일채움공제</li> <li>서울시희망두배청년통장</li> <li>경기도일하는청년통장</li> <li>부산시청년내일채움공제</li> </ul>
<b>민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빌리은행</li> <li>청춘희년네트워크</li> <li>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li> <li>희망을만드는사람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년연대은행 토닥</li> <li>희년은행</li> <li>데나리온뱅크</li> <li>사회연대은행</li> <li>겨자씨은행(충신대)</li> <li>키다리은행(한양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년연대은행 토닥</li> <li>희년은행</li> <li>데나리온뱅크</li> </ul>
<b>교회</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온누리교회119</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분당우리교회 긴급구호뱅크</li> </ul>	

## 3. 기윤실 부채해방운동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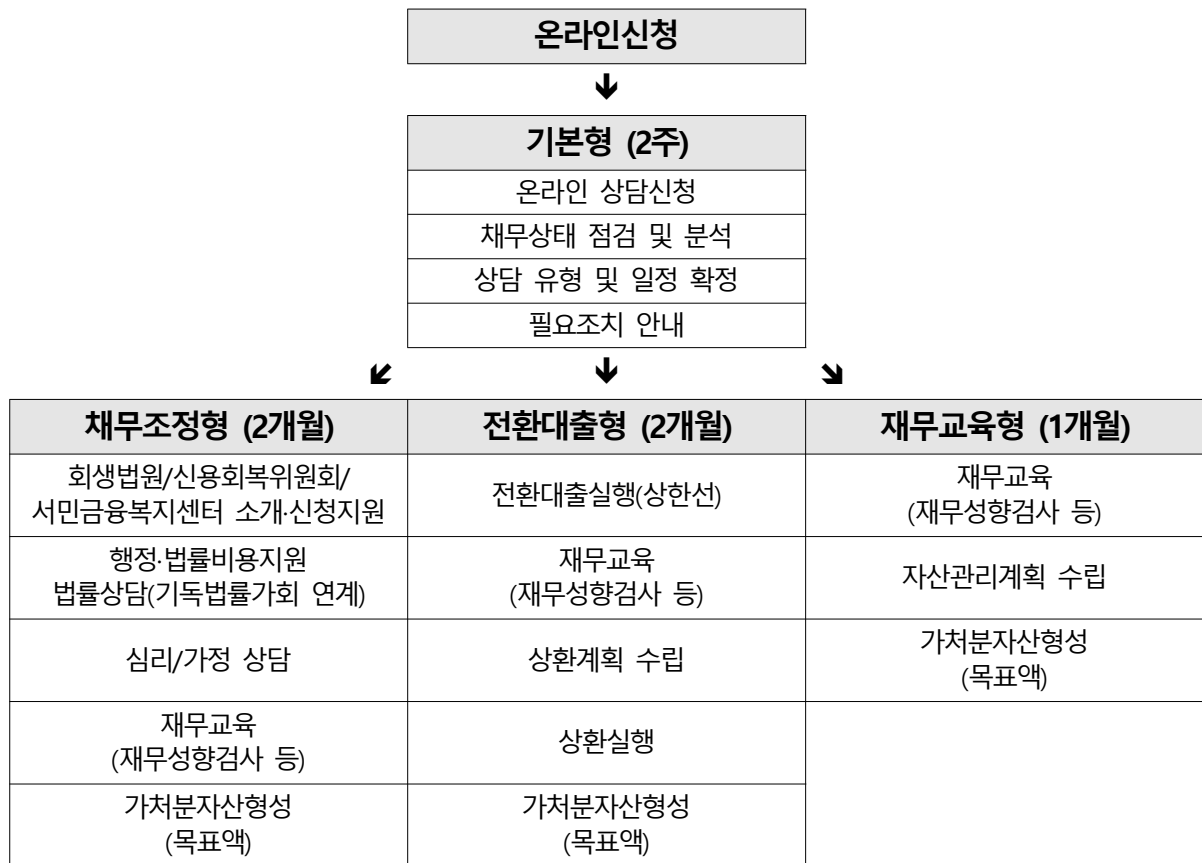
### (1) 소책자 제작 및 보급

- 부채문제의 현상과 원인, 부채문제에 대한 성경적 관점, 부채해방운동의 필요성, 대안 등을 담은 소책자를 제작, 배포하여
- 교회와 성도들이 부채 원인 등에 대한 선입견을 내려놓고 이웃 섬김의 자세로 부채문제 해결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성	주제	내용
1면	표지	
2면	부채현상	2017년 한국 사회 가계부채 현상
3면	부채원인	가계부채 원인
4면	부채사례	장기채무자 사례
5면	실천과제	빛에 대한 세상의 태도 VS 빛에 대한 성경의 태도
6면		
7면		
8면	실천사례	교회, 시민사회의 실천사례
9면	정책대안	부채해결을 위한 정책과 대안
10면	참고자료	참고도서소개
11면	기윤실 소개	기윤실 소개
12면	부채해방운동	부채해방운동소개 참여방법안내

## (2) 기윤실 부채해방상담센터 운영

- 기윤실이 먼저 부채문제를 겪고 있는 성도와 시민들의 고통을 헤아리고 해결을 돕기 위해 부채해방상담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 부채해방상담센터는 채무자의 상황을 판단하고 맞춤형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한 편, 채무자의 심리/가정상담을 함께 진행하여 채무자가 전인적으로 회복되는 것을 목적으로 할 것입니다.
- 이를 위해 센터운영을 책임질 센터장을 선임하고, 기윤실의 네트워크를 통해 자원상담가 풀(1단계 기본형 상담) 및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협력체계(2단계 전문상담·교육 등)를 구축할 것입니다.



## (3) 교회의 부채해방운동 컨설팅/지원

- 기윤실의 운영경험을 바탕으로 부채해방운동에 동참하고자 하는 교회들에 대해 컨설팅/지원을 진행하겠습니다.

교회 자체 운동 조직	부채 소각	부채해방운동 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윤실 노하우 이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단체 연결 및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윤실 부채해방운동 지원방안 소개 및 각 부채해결단체 지원 연결</li> </ul>







#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민주화에 대한 열기가 절정을 이루던 1987년 12월, 손봉호, 김인수, 이만열, 장기려, 원호택, 이장규, 강영안 등 함께 성경공부를 하던 기독교인들이 뜻을 모아 시작한 **기독교시민운동**입니다. 기윤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정통적 기독교신앙을 기본 이념으로 복음에 합당한 윤리적 삶을 살도록 한국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며, **정직/ 책임/ 정의**를 핵심가치로 두고 있습니다.

기윤실은 지난 30년 간 좋은교사운동, 기독교법률가회, 공명선거운동, 국정감사모니터시민연대, 공의정치실천연대, 교회개혁실천연대, 놀이미디어교육센터, 크리스천라이프센터, 대한민국교육봉사단 등 우리 시대에 필요한 다양한 운동을 만들어냈습니다. 아울러, 기윤실은 네트워크운동으로 기독교윤리를 각 지역 현안에 맞게 전개하기 위해 전국 11곳에서 지역기윤실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 ○ 2017년 기윤실 주요운동

기윤실은 창립30주년,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우리 사회의 절박한 문제를 고민하며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자발적불편운동, 교회신뢰운동, 좋은사회운동, 바른가치운동, 청년운동”**을 전개합니다.

## ○ 섬기는 사람들

**이사장** 백종국(경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공동대표** 정병오(상임공동대표, 오딧세이학교 교사), 배종석(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정현구(서울영동교회 담임) **상임집행위원** 신동식(자발적불편운동본부장(빛과소금교회 담임목사), 조성돈(교회신뢰운동본부장(실천신대원 목회사회학 교수), 이상민(좋은사회운동본부장(법무법인 에셀 대표변호사), 목광수(바른가치운동본부장(서울시립대 철학과 교수), 박선영(바른가치운동본부장(한체대 스포츠청소년지도학과 교수), 이장형(기독교윤리연구소장(백석대 기독교학부 교수), 조흥식(사회복지위원회 공동위원장(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사무처** 김현아 박제민 박진영 윤신일 최진호

## ○ 후원 안내 (문의 : 02-794-6200)

- 후원계좌 | 예금주 기독교윤리실천운동 | 국민 037-01-0504-979 하나 109-228746-00104
- 기윤실 홈페이지 좌측 '후원하기'

기윤실은 단체운영에 있어 더 깊은 투명성, 더 높은 책무성, 더 넓은 공공성을 지향합니다. 이를 위해 기윤실 운동은 개인·단체 회원 여러분의 후원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고, 1999년부터 외부 공인회계감사를 받으며 재무적 투명성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54길 30, 401호 (세대빌딩)  
전화 02-794-6200 팩스 02-790-8585  
이메일 [cemk@hanmail.net](mailto:cemk@hanmail.net) 홈페이지 [www.cemk.org](http://www.cemk.org)



기윤실 홍보영상



기윤실 후원하기

# 빛에서 빛으로

가계부채로 고통 받는 이웃을 위한 기독교의 역할



##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주소] (04382)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54길 30 세대빌딩 401호

[전화] 02-794-6200

[이메일] cemk@hanmail.net

[홈페이지] www.cemk.org